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5.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 세법연구팀장

공동연구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조교수

연구보조자: 이희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원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요 약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이하 「부가세 환급 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동 제도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에 신설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연구 개요) 「부가세 환급 특례」 운용을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 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제언
 - (타당성)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지원 대상·방식의 적절성, 여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
 - (효과성)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도를 가용 자료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 (개선방안)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종합적 판단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

2. 제도 현황

- (제도 현황) 「부가세 환급 특례」의 특례 사항 및 지출 규모 등은 다음 요약·제시된 바와 같음
 - (특례 사항)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환급대상 의료용역)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또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등은 적용 제외
- (제도 연혁) 지난 2015년 12월 신설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기한이 여섯 차례 연장
- (지출 규모) 「부가세 환급 특례」의 (예상) 감면액은 연간 697억원 수준(2023~2025년 평균)
 - 2023년(실적) 296억원, 2024년(전망) 874억원, 2025년(전망) 920억원
- (환급 현황) 동 제도가 도입·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83만 962건의 환급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환급액은 총 2,398억원 수준
 - 특히 2024년 환급건수(환급액)가 전년 환급실적의 2.7배(2.6배)인 103만 824건(1,173억원)으로 집계됨¹⁾

<표 1> 「부가세 환급 특례」 환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환급건수	40,777	56,094	84,730	148,611	28,181	3,506	54,574	383,665	1,030,824
환급액	92	121	161	228	45	9	125	445	1,17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1) 집계방식 등의 차이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음

3. 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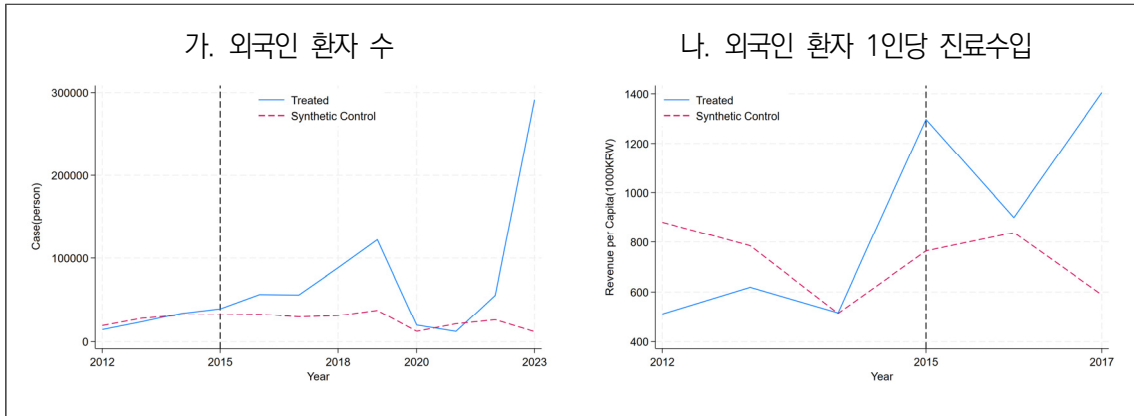
- (타당성 분석) 제도 운영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유사·중복의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
 - (제도 운영의 필요성) 「부가세 환급 특례」는 의료·보건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일정 수준 인정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 기간을 고려할 필요
 - 20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상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는 2024년 조기 달성된 바, 동 제도 도입·운영의 목적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가능
 - 한편 동 제도 도입·운영으로 내국인·외국인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세수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그간 운영 기간 역시 상당하였음
 - 참고로 EU·영국 등은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와 유사한 환급 특례 등의 운영은 확인되지 않음
 - (지원방식의 적절성)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동 제도가 적용되는 특례적용의료기관, 환급대상 의료용역, 외국인관광객의 범주는 대체로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판단
 - 특례적용의료기관 범주 확대 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원리인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여타 용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유사·중복의 가능성) 동 제도와 유사 목적을 지닌 조세·재정 지원들은 발견하기 어려움
 - 가령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의 경우 중복성보다 보완성이 두드러짐
 - 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제26조)·과태료(제31조) 등의 제재 장치 존재

4. 효과성 분석

-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 (분석 내용)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
 -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외연 효과) 및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내연 효과)으로 측정
 - (분석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도별·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구득하여 활용
 - 해당 자료로부터 피부과, 성형외과 등 24개 진료과별 유치 실적 파악 가능
 - (분석 방법) 최근 정책 효과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대조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
 - 결과변수·통제변수 추세가 처치집단과 유사하도록 합성을 통해 통제집단을 가상적으로 생성하는 방식(Abadie et al., 2010)
 -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외 진료과를 잠재적인 통제집단 후보군으로 활용
 -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외연 효과는 발견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내연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즉 「부가세 환급 특례」 도입 이후 피부과·성형외과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의 증가는 관찰되나,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측면에서의 증가는 미관찰됨
 - (분석 한계) 본 연구의 추정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부가세 환급 특례」 운영 기간이 우리나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상승기와 겹침
 - 우리나라 의료진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및 선호, 우리나라 화장품 등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석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부가세 환급 특례」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추정 결과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 (세수 효과) 의료기관 진료수입 자료 및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의 세수 효과를 시산함

- 세수 효과는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가분으로 정의
 - 세수 증가분은 동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에 피부과·성형외과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출
 - 진료비 증가분은 제도 도입 전후 피부과·성형외과의 진료비 변화분과 그 외 진료과의 진료비 변화분을 비교하여 추정
- 「부가세 환급 특례」의 세수 효과는 0.43~0.85원 수준으로 추정됨
 - 즉 동 제도 도입·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증가분은 해당 조세지출 규모의 43~85% 수준
 - 이는 이동희·고대영(2024) 등의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 단 간접적인 세수 증가분까지 고려할 경우 세수 효과는 증대될 여지가 있음

5. 종합평가

□ 이상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는 「부가세 환급 특례」 도입·운영 목적이 상당 수준 달성되었음을 시사

- 동 제도는 2015년 12월 신설되어 2025년 7월 현재까지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기한이 총 여섯 차례 연장되어 왔던바, 조세특례 제도의 운영원칙에

- 따라 동 제도의 일몰 종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 일몰 종료 이후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목 차

I. 서론	13
1. 심층평가 개요	15
2. 선행연구	17
가. 부가가치세 관련	17
나. 의료관광 관련	19
다. 「부가세 환급 특례」 관련	22
II. 제도 현황	25
1. 제도 개요	27
가. 도입 목적	27
나. 제도 연혁	27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29
라. 수혜내용	30
2. 운영 현황	31
가. 지출 규모	31
나. 환급 현황	36
III. 타당성 분석	45
1. 지원의 타당성	47
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47
나. 외국인 환자 방문 사유	50
다. 해외 주요국 사례	52
라. 소결	53
2. 지원의 적절성	54
가. 정책대상 측면	54

나. 정책수단 측면	57
다. 소결	57
3. 지원의 중복성	58
4. 요약 및 소결	61
IV. 효과성 분석	63
1.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65
가. 분석 개요	65
나. 분석 방법	67
다. 분석 자료	73
라. 분석 결과	75
2. 세수 효과	83
3. 요약 및 소결	89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91
1. 종합평가	93
2.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95
부록	99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법령	101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해외 사례	104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전문가 질의서	110

표 목 차

<표 II-1> 제도 연혁	27
<표 II-2>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주요 추진 경과	28
<표 II-3> 「부가세 환급 특례」 지출 규모	31
<표 II-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32
<표 II-5>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국세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	34
<표 II-6> 「부가세 환급 특례」 환급 현황	36
<표 II-7>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37
<표 II-8> 의료용역별 환급액	37
<표 II-9>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및 환급액 비중(2024년)	38
<표 II-10> 의료용역별 건당 환급액	39
<표 II-11>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건수	40
<표 II-12>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액	41
<표 II-13>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건수 및 환급액 비중(2024년)	41
<표 II-14> 외국인 환자 국적별 건당 환급액	42
<표 III-1>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고려요소	51
<표 III-2> 해외 주요국의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	53
<표 III-3>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기관 수(2020년)	56
<표 III-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58
<표 III-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59
<표 III-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환급액 추이	59
<표 III-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1조	60
<표 IV-1>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76
<표 IV-2>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한류 효과 통제 시	79
<표 IV-3>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내국인환자를 이용한 위약 검증 시	82

<표 IV-4> 연도별 환급건수 및 조세지출	83
<표 IV-5> 연도별 진료비 증가 효과	86
<표 IV-6> 연도별 세수 증대 효과	87
<표 IV-7>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대 효과	88

그림 목 차

[그림 I-1]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추이	16
[그림 III-1] 외국인 환자 수 추이: 2009~2023년	48
[그림 III-2] 지역별 외국인 환자 수 추이: 2009~2023년	49
[그림 III-3]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 추이: 2009~2023년	49
[그림 III-4]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특례적용의료기관 수 추이	55
[그림 IV-1] 피부과·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수 추이	67
[그림 IV-2]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수 비교	69
[그림 IV-3]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비교	70
[그림 IV-4]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수 및 전 세계 한류 동호회원 수 추이 ..	72
[그림 IV-5]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비교	74
[그림 IV-6]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외국인 환자 수	77
[그림 IV-7]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	77
[그림 IV-8]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한류 효과 통제 시 외국인 환자 수 ..	79
[그림 IV-9]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한류 효과 통제 시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80
[그림 IV-10]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내국인 진료인원 비교	81
[그림 IV-11] 연도별 환급건수 및 조세지출	84
[그림 IV-12] 연도별 진료비 증가 효과	86
[그림 IV-13] 연도별 세수 증대 효과	87
[그림 IV-14]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대 효과	88

I. 서론



I.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이하 「부가세 환급 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동 제도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에 신설
 -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본 제도에 대한 (임의)심층평가는 지난 2020년 한 차례 수행된 바 있음²⁾
 - 해당 심층평가는 장기적으로 제도 효과성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몰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수혜 내용 등의 변화 없이 적용 기한만 단순 연장되었던 반면, 의료관광객 수 추이 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으나,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그림 I-1] 참조)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양상을 감안하는 가운데 「부가세 환급 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가용 자료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일몰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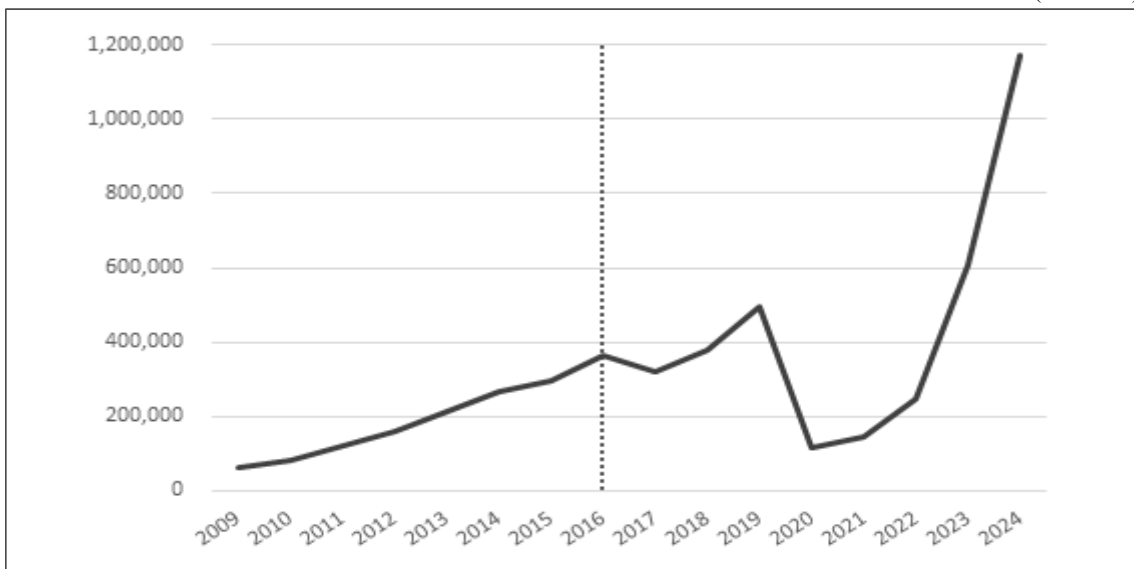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부가세 환급 특례」 운용을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 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제언
 - (타당성)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지원 대상·방식의 적절성, 여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
 -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변화된 정책 환경에 주목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검토

2) 이하 제2절 선행연구 부분 참조

-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책대상 측면, 정책수단 측면 등에 초점을 두고 동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
- 다른 지원제도들과의 중복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조세·재정지원 현황을 폭넓게 파악
- (효과성)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도를 장기간 누적된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 기존 심층평가(정다운 외, 2020)에서도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 추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도 도입 이전 처치군과 대조군의 추세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고 분석 기간 역시 2018년까지로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가장 최근까지의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에 합성대조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의 효과성 추정을 시도
- (종합평가)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종합적 판단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

[그림 I -1]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추이

(단위: 명)



주: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4. 3.)

- (연구 목차)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장 제1절에서는 본 조세특례 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소개·정리
 - 제II장에서는 평가대상 조세특례 제도의 현황을 파악·제시
 - 제III장에서는 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중복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례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
 - 제IV장에서는 가용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도입·운영의 효과성을 엄밀히 분석·평가
 - 제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일몰 연장 필요성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2. 선행연구

가. 부가가치세 관련³⁾

- 부가가치세 관련 학술적 관심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Sung, 2018; OECD, 2014), 부가가치세의 소비자 전가(Kosonen, 2015; Benedek et al., 2020; Benzarti et al., 2020) 등에 집중되어 있음
- Sung(2018)의 연구를 비롯한 유사 선행연구는 소비세가 가구 소득 기준으로 명확하게 역진성이 존재함을 주장함
 - Sung(2018)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 질수록 점차 낮아짐
 - 2014년 기준 소득 1분위는 4.38%, 소득 10분위는 3.29%
 - 소비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는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OECD가 공동으로 발간한 OECD(2014)는 소비세의 소득 대비 역진적인 구조와 지출 기준의 비례적 혹은 다소간의 누진성을 확인함

3) 이하에서는 광의의 소비세(consumption tax) 및 개별소비세(excise tax),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를 편의상 엄밀한 구분 없이 혼용하기로 함.

-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수도, 에너지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차등세율을 통해 지출 기준의 누진성을 다소 확보할 수 있으나, 해당 정책으로 고소득층이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는 표적화의 실패를 지적
- 소비세의 정책 변화, 구체적으로 세율 변화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의 가격 책정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미용·성형 용역 이용량 변동 확인에 유용한 정보
 - 이론적으로 세율 변화 시 해당 변화만큼을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일부 공급자가 수용하는 등 다양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
- 핀란드 정부가 2007년 단행한 이발업계(hairdressing service) 대상의 부가세 인하(22→8%) 효과를 분석한 Kosonen(2015)은 해당 부가세 인하가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귀속되는 효과는 완전한 전가(pass through) 대비 약 절반인 것으로 추정
 - 공급자가 부가세 인하 효과의 일부를 흡수하고, 일부의 가격 변화를 통한 공급량 확대를 통해 수익을 증가
- 이와 같은 부가세 세율 변화의 가격 귀착은 산업, 시장 구조, 국가, 경쟁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질적이며, 따라서 부가세율의 변화를 통한 정책 효과의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Benedek et al., 2020)
 - 부가세율을 통한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소 혹은 과대하게 발현될 위험성을 시사
 - 특히 Benedek et al.(2020), Benzarti et al.(2020)의 분석처럼 부가세가 인상될 때와 인하될 때 소비자 가격에 비대칭적으로 반영되면서, 부가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가 정책 담당자의 기대보다 과소하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
- 미용·성형 용역의 부가세 환급은 공급자가 책정하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효과가 작을 수 있으나, 외국인 소비자가 부가세를 사후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 조정을 시도하거나 이용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음

나. 의료관광 관련

1) 의료관광의 개념적 이해(Connell, 2006)

- Connell(2006)은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원인과 의미를 서술한 논문 발표
- 주로 선진국 환자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
 - 선진국의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다양한 이유(예: 비용, 대기 시간)로 수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고 대기 시간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개도국으로 이동하여 의료용역을 제공받는 형태가 나타남
 - 개도국의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브로커 활성화, 병원의 해외 마케팅 및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
 - 숙박, 항공권, 관광, 의료용역이 패키지 형태로 묶여 관광 상품으로 발전
- 성형, 피부질환, 치과 등 의료용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의료 공급자의 능력이 인정된 개도국(예: 인도)의 경우 고난도 수술을 진행하기도 함
 - 외국에서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치료 여부가 주 생활권에 노출되지 않는 장점도 존재
- 국가 내 관광 산업 부가가치 향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의료용역 공급 자원과 역량이 타국의 환자들에게 이전되면서 개도국 내 국내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의료관광의 제공 서비스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혹은 공공보험 체계 내에서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외국인 대상 의료용역 전달은 자국의 취약계층 대상의 의료 접근성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의료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개도국일수록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의 약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2) 터키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Gulsen and Solak, 2024)

- 터키는 지리적으로 관광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며, 관광 세부 분야 중 하나로 의료관광 산업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Gulsen and Solak(2024)은 터키의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소개

- 외국인 대상으로 제공된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소득세, 법인세 공제 혜택 제공
 - 본 연구의 부가가치세 면세뿐 아니라 공급자 대상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 각각에 적용되는 세제 운영

- 세제 혜택뿐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아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추진되었음
 - 환자 유치 여행 경비, 직원 외국어 교육비, 광고비, 현지 법인 운영비, 박람회 개최비, 환자의 합병증 및 여행자 보험비 등 각종 영업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최소 60% 이상)을 지원함

-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 참고할 사항이지만, 해당 국가의 사례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다양한 종합 지원 대책이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본 연구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의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대조군으로 비교되기는 어려운 한계 존재
 - 또한 Gulsen and Solak(2024)의 연구는 정량적인 효과성 추정 결과 없이 정책의 소개 이후 해당 지원의 결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의료관광 유치 프로그램 및 시장이 확대된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수준

3) 의료관광 행태와 국가 보건의료 제도 간 관계(Hanefeld et al., 2013)

-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상 세액공제제도 운영에 있어 해당 제도가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의료관광을 통한 산업 측면에서의 편익과 더불어 해당 제도가 유인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의료용역 전달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비용도 존재
 - 특히 국민건강보험 측면에서의 편익과 비용도 주요한 정책 관심 분야
- Hanefeld et al.(2013)은 증가하는 영국인들의 해외 의료관광 및 자국으로 유입되는 의료용역 목적의 외국인 수요를 영국의 공공의료시스템(NHS) 측면에서 검토
-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관광이 국가 보건의료 제도에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경로에 대한 시사점 제시
- NHS 기준으로 다양한 비용·편익 발생 사례를 검토
- (비용 사례 1) NHS의 의료용역 전달 대기 시간 등을 해외 의료관광 경로를 통해 해소한 이후 영국으로 귀국 시, 의료용역 이후의 합병증, 후속 의료 조치 등은 NHS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존재
 - 미용·성형 관광 이후 각종 부작용, 합병증 등 치료를 위해 연간 약 8.2백만 파운드 규모의 NHS 재정 부담이 산출
 - (비용 사례 2) 해외 불임 시술 관련 관광을 통해 다태아의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며, 출산 이후 산모 및 신생아의 후속 진료에 NHS의 비용 부담 발생 가능
 - 2010년 기준 15.5백만의 파운드 재정 부담 산출
 - (편익 사례 1) 외국인 환자 치료로 NHS에 약 42백만 파운드의 수입 예상
 - 수반되는 관광 소비로 2010년 기준 약 219백만 파운드의 추가 수입 예상
 - (편익 사례 2) NHS의 의료용역을 위한 대기 시간 및 비용 감소로 건강 개선 및 장기적인 의료·복지 비용 절감 가능
- 부가세 환급 제도 운영을 단순한 의료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혹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단 이와 같은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

다. 「부가세 환급 특례」 관련

1) 조세특례 심층평가(정다운 외, 2020)

- 2016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약 1년씩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에 첫 심층평가가 수행됨
- 효과성 분석은 크게 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② 거래 양성화를 통한 세수 효과 ③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로 구분되어 수행됨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분석을 위해 사건 분석(event-study analysis) 및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
 - 각 분석에서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수와 진료과별 수입 현황 자료를 활용
- 사건 분석을 통해 연도별 고정효과와 진료과별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환자 수와 진료비 수입의 변화를 추정
 - 부가세 환급 대상 진료과인 피부과·성형외과를 처치집단, 그 외 진료과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환자 수와 진료비 변화를 검토
 - 제도 도입 시기인 2016년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3년간 진료인원 및 진료비의 변화 양상을 비교
 - 2016년 이후 피부과·성형외과에서 그 외 진료과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 증가가 관찰됨
- 이중차분법에서는 대조군을 확장하여 사건 분석에서 고려하였던 그 외 진료과에 더해, 국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한 내국인을 추가로 고려
 - 국내 피부과·성형외과를 대조군으로 설정한 이중차분 분석에서 제도 효과는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음
 - 그 외 진료과 중 평행 추세 가정을 만족하는 진료과로 내과통합을 선택
 -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의 증가가 관찰됨
- 이상의 분석 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

- 분석의 단위(unit of observation)가 환자 개개인이 아닌 진료과목으로, 본 연구의 가용 자료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즉 환자 단위의 미시 분석이 어려우며, 다양한 통제 변수의 활용이 여의치 않은 분석 환경임은 동일
- 제도 도입 후 3년 정도의 자료 분석을 시도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자료를 2024년까지 확대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음
 - COVID-19 팬데믹 및 회복 시기 역시 분석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
 - COVID-19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이용을 제한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2022년 COVID-19 팬데믹 종료 이후 회복 속도에서 부가세 환급 제도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합성 대조법(synthetic control method)과 같은 대조군 선택 측면에서의 대안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2) 현황 분석 보고서(홍현아, 2020; 김미희·김재현, 2022)

- 「부가세 환급 특례」는 의료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의료관광 산업 유치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법 사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며, 세원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부가세 환급 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통해 의료 소비자가 의료 공급 내역 및 비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진료비 산정 및 지불의 투명성이 제고됨
 - 아울러 홍현아(2020)는 세원 양성화의 근거로 부가세 환급 가맹기관과 미가맹기관의 제도 도입 전후 진료수입 추세를 비교하여 가맹기관 진료수입의 상대적인 증가를 제시
 - 가맹기관의 진료수입은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15.9%, 2017년 8.4% 증가한 반면, 미가맹기관의 진료수입은 2016년, 2017년 각각 25.7% 감소
 - 단 가맹기관 및 미가맹기관 간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정책 도입 전후 비교이므로, 이를 모두 세원 양성화의 효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2020년부터의 COVID-19 팬데믹은 동 제도 운영에 강한 외생적 충격으로 작용

- 김미희·김재현(2022)에 따르면,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외국인 환자는 2019년 대비 76.5%,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건수는 81.0% 감소함
 - 이듬해인 2021년에는 더욱 큰 영향을 받았던바, 특히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건수는 2019년 대비 97.9% 감소함
- 김미희·김재현(2022)은 팬데믹 종료 이후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해외 수요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 동 제도의 일몰 연장뿐 아니라 환급 과정에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즉시환급제 도입)의 필요성 강조

3) 실효성 및 타당성 분석(이동희·고대영, 2024)

- 이동희·고대영(2024)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외국인 환자 수와 진료비의 변화 양상을 추정
-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대조군으로 미용·성형 외 진료과목들을 활용
 - 이는 정책 도입 이전 평행 추세 가정이 만족됨을 기반으로 함
-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대조군 대비 외국인 환자 수는 평균 3만 1,742명 증가, 진료비는 평균 7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류 효과를 통제한 패널 분석 결과
- 이중차분법을 통해 평균적인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으므로, 정책 도입 이후 동태적인 정책 효과의 변화를 추정하지 못한 한계점 존재
- 한류 동호회원 수를 활용한 한류 효과의 간접적인 통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구분을 통한 세부 분석 수행 등은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됨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
 - 2015년경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불법 브로커 및 고액 수수료 확산 등) 및 메르스 여파 등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시장이 위축됨
 - 이에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나. 제도 연혁

- 본 제도는 2015년 12월 신설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기한이 여섯 차례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 도래 예정임(<표 II-1> 참조)

<표 II -1> 제도 연혁

개정 연도	개정 내용
2015	- 제도 신설(적용 기한: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2016~2025	- 일몰 연장(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2>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 국제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설(의료통역, 병원국제마케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Medical Korea 2010」 개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 협약에 근거한 국비환자 최초 유치(UAE)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의사 연수(한-몽 서울프로젝트) 실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의사 연수(한-러 보건의료협력 연수) 실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개설 • 사우디 의사 유료 연수프로그램 개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외국인 환자 수 100만명 돌파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5. 12.) 및 시행(2016. 6.) - 유치기관 등록갱신제(3년) 도입,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창구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서울 명동) •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 제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 시행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제정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내 사후관리센터(Post Care Center) 개소 • 중국(상해) 내 한국의료 거점센터 개소 •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인천국제공항) • 한국식 병원경영과정 연수프로그램 실시(카타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Medical Korea 2019 역대 최대 해외 참가(47개국, 2,331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Korea 한국의료 브랜드 선포 • 외국의료인 온라인 연수(Medical Korea Academy) 시행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 시행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기관 질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2021. 12.) 및 시행(2021. 12.) • 누적 외국인 환자 수 300만명 돌파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해외진출법 개정(2022. 12.) 및 시행(2022. 12.)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합동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2023. 5.) • 외국인 환자 유치 역대 최고 실적 기록(60.6만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및 진료비·유치수수료 실태조사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2024. 7.) • 외국인 환자 누적 실환자 505만명, 누적 연 환자 1,114만명 돌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4.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4. 3.)

- 한편 본 제도의 도입·운영은 정부가 장기간 추진 중인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틀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표 II-2> 참조)
 - 해당 전략은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진료과목 불균형 개선 및 진료분야 다양화를 위해 투트랙(성형·피부과, 한국 특유 한의약) 전략을 수립·발표함⁴⁾
 - 참고로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는 2024년 조기 달성됨
 -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23년 61만명 대비 93.2% 증가한 117만명⁵⁾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⁶⁾에 따른 비거주자임
 - 단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또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등은 적용 제외됨
- (특례적용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⁷⁾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5. 30.)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4. 3.)

6)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환급대상 의료용역)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라. 수혜내용

- (외국인관광객 환급) 외국인관광객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의료용역 공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용역공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 부가가치세액 공제)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송금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한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⁹⁾
 -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제받은

8)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11항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¹⁰⁾

- (사후관리)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환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운영 현황

가. 지출 규모

- (지출 규모) 「부가세 환급 특례」의 (예상)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697억원 수준임 (2023~2025년 평균)
 - 이는 코로나19 시기 이전 조세지출 규모(2018~2020년 평균 153억원)의 4.6배에 해당하는 수치
 - 최근 「부가세 환급 특례」의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표 II-3> 참조)
 - 2023년 296억원(실적), 2024년 874억원(전망), 2025년 920억원(전망)

<표 II -3> 「부가세 환급 특례」 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출액	91	109	137	155	167	6	25	296	874	920

주: 2024년과 2025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10항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국세 분야에 속하는바, 2023년 기준 간접국세 분야의 조세지출 실적은 13.3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19.0%를 차지(<표 II-4> 참조)
 - 이는 국민생활안정 분야(31.3%)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두 분야의 조세지출 실적이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절반을 차지함
 - 2024년과 2025년에 동 제도가 속한 간접국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간접국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14.1조원(19.7%)으로 전망됨
 - 2025년 간접국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14.6조원(18.7%)으로 전망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국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표 II-5> 참조)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제도의 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간접국세 분야 조세지출의 0.2%를 차지함
 - 이는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2023년 기준 0.3%) 등과 유사한 수준임
 - 해당 비중은 2024년과 2025년 0.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간접국세 분야 전체 조세지출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말해 줌

<표 II -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중소기업	37,848	5.4	35,894	5.0	38,136	4.9
연구개발	50,719	7.3	35,557	5.0	37,402	4.8
국제자본거래	26	0.0	0	0.0	0	0.0
투자촉진	21,750	3.1	18,189	2.5	43,599	5.6
고용지원	45,897	6.6	49,845	7.0	52,863	6.8
기업구조조정	2,303	0.3	4,026	0.6	4,197	0.5

<표 II -4>의 계속

(단위: 억원, %)

분야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금융기관구조조정	0	0.0	0	0.0	0	0.0
지역균형발전	16,051	2.3	13,448	1.9	14,765	1.9
공익사업지원	9,767	1.4	6,245	0.9	6,659	0.9
저축지원	26,026	3.7	34,517	4.8	38,114	4.9
국민생활안정	218,357	31.3	230,553	32.3	251,066	32.2
근로·자녀장려	52,309	7.5	57,930	8.1	58,420	7.5
기타직접국세	36,672	5.3	38,404	5.4	37,504	4.8
간접국세	132,540	19.0	140,940	19.7	145,772	18.7
외국인투자	1,143	0.2	776	0.1	813	0.1
제주국제도시육성	1,944	0.3	1,710	0.2	1,799	0.2
기업도시	72	0.0	36	0.0	38	0.0
지역발전	7	0.0	11	0.0	12	0.0
농협구조개편	619	0.1	755	0.1	795	0.1
공적자금 회수	0	0.0	0	0.0	0	0.0
수협구조개편	72	0.0	73	0.0	77	0.0
사업재편 계획	0	0.0	0	0.0	0	0.0
기회발전특구 지원	0	0.0	0	0.0	0	0.0
기타	42,541	6.2	45,396	6.4	48,150	6.2
합계	697,664	100.0	714,305	100.0	780,178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4.

〈표 II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국세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실적	비중	전망	실적	비중	전망
간접국세 전체	132,540	100.0	140,941	100.0	145,775	100.0	145,775	100.0	145,775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66,949	50.5	71,246	50.5	75,324	50.6	75,324	50.6	75,324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3,393	2.6	4,409	3.1	4,641	3.1	4,641	3.1	4,641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57	1.3	1,775	1.3	1,868	1.3	1,868	1.3	1,868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3,047	17.4	22,408	15.9	23,586	15.9	23,586	15.9	23,586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2,446	1.8	2,159	1.5	2,295	1.5	2,295	1.5	2,295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0	0.0	0	0.0	732	0.0	732	0.0	73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0.0	17	0.0	18	0.0	18	0.0	18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65	0.7	746	0.5	785	0.5	785	0.5	785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57	0.0	59	0.0	62	0.0	62	0.0	62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04	1.0	2,078	1.5	2,204	1.5	2,204	1.5	2,204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	0.0	3	0.0	4	0.0	4	0.0	4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4	0.0	29	0.0	31	0.0	31	0.0	31
농업·임업·어업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	8,802	6.6	8,326	5.9	8,725	5.9	8,725	5.9	8,725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81	0.3	375	0.3	393	0.3	393	0.3	39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67	1.6	2,318	1.6	2,440	1.6	2,440	1.6	2,44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5	0.0	6	0.0	17	0.0	17	0.0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96	0.2	874	0.6	920	0.6	920	0.6	92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3,853	10.5	15,306	10.9	16,110	10.9	16,110	10.9	16,110

〈표 II -5〉의 계속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실적	비중	전망	실적	비중	전망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740	2.1	3,436	2.4	3,008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580	1.9	3,622	2.6	3,822	2.6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78	0.1	67	0.0	70	0.0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	0.0	2	0.0	2	0.0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599	0.5	617	0.4	652	0.4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438	0.3	424	0.3	448	0.3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5	0.0	5	0.0	5	0.0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32	0.0	39	0.0	41	0.0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181	0.1	346	0.2	363	0.2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1	0.0	2	0.0	2	0.0			
농·어민지원율위한인지세면제	88	0.1	106	0.1	113	0.1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7	0.0	3	0.0	3	0.0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30	0.1	90	0.1	105	0.1			
금융시장효율화·안정화를위한증권거래세면제	1,198	0.9	504	0.4	587	0.4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451	0.3	1,081	0.8	1,258	0.9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1	0.0	0.4	0.0	0.4	0.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3	0.0	14	0.0	14	0.0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65,569	49.5	69,690	49.4	70,451	48.3			
경과규정 항목	22	0.0	5	0.0	0	0.0			

주: 단위 맞추를 위해 반올림함에 따라 표의 합계와 실제 수치가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4.

나. 환급 현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 특례」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동 제도가 도입·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83만 962건의 환급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환급액은 총 2,398억원 수준임¹¹⁾(<표 II-6> 참조)
 - 특히 2024년 환급건수(환급액)가 전년 환급실적의 2.7배(2.6배)인 103만 824건 (1,173억원)으로 집계됨

<표 II -6> 「부가세 환급 특례」 환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환급건수	40,777	56,094	84,730	148,611	28,181	3,506	54,574	383,665	1,030,824
환급액	92	121	161	228	45	9	125	445	1,17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1) 의료용역별

- 2016~2024년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및 환급액 추이는 <표 II-7> 및 <표 II-8>에 각각 제시되어 있음
 - 2024년 기준 피부재생술 등의 의료용역 환급건수(환급액)가 총 30만 8,341건 (33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 환급건수(환급액)의 29.9%(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II-9> 참조)
 - 이는 기타 항목 제외 시 환급대상 의료용역 중 가장 높은 비중임
 - 2024년 환급건수를 기준으로 주름살제거술(6.5%), 쌍꺼풀수술(3.7%) 등의 비중이 피부재생술 등 다음으로 높음
 - 2024년 환급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름살제거술(8.4%)과 쌍꺼풀수술(5.5%)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이 특정 의료용역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양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됨
 - 치아성형술, 제모술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은 제도 운영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

11) 집계방식 등의 차이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

<표 II -7>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단위: 건)

의료용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쌍커풀수술	6,190	6,821	4,406	11,826	1,519	353	4,168	13,957	37,668
코성형수술	2,114	2,579	3,218	6,159	1,181	196	2,405	4,362	5,887
유방수술	503	684	959	3,781	779	64	540	955	1,583
지방흡입술	1,176	1,347	2,053	4,716	1,196	179	2,181	4,820	8,776
주름살제거술	2,929	4,446	8,373	26,370	3,582	384	7,187	34,768	66,812
안면윤곽술	1,235	2,001	2,190	3,037	811	139	2,069	2,809	5,808
치아성형술	67	112	121	302	67	8	114	349	2,150
악안면교정술	91	149	208	214	79	20	222	278	796
색소모반 등 치료술	2,020	2,603	3,593	3,865	664	73	547	2,199	7,874
여드름 치료술	369	455	535	792	94	14	136	509	1,915
제모술	59	67	52	117	12	5	38	91	391
탈모치료술 등	475	581	820	1,118	207	98	587	1,409	2,868
문신술 등	447	401	313	413	40	19	194	933	6,432
지방용해술	760	1,131	1,042	899	91	26	259	4,864	19,600
피부재생술 등	10,324	15,582	22,073	20,163	3,622	499	7,303	52,267	308,341
기타	10,002	17,135	32,756	64,839	14,237	1,429	24,602	259,095	553,923
전체	40,777	56,094	84,730	148,611	28,181	3,506	54,574	383,665	1,030,82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표 II -8> 의료용역별 환급액

(단위: 백만원)

의료용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쌍커풀수술	1,326	1,533	1,362	1,883	310	71	1,144	3,165	6,451
코성형수술	978	1,219	1,611	2,065	417	80	1,390	2,944	3,947
유방수술	413	636	899	1,268	245	49	503	1,047	1,575
지방흡입술	587	797	1,146	1,763	393	73	771	2,160	4,237
주름살제거술	990	1,389	1,763	2,657	438	100	1,697	5,017	9,835
안면윤곽술	1,107	1,832	2,054	2,500	609	111	1,868	3,007	3,575
치아성형술	9	14	35	38	7	23	38	106	472
악안면교정술	134	230	301	232	91	5	243	354	463
색소모반 등 치료술	123	160	203	220	34	4	37	142	593

<표 II -8>의 계속

(단위: 백만원)

의료용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드름 치료술	26	38	49	49	5	0	9	33	133
제모술	3	4	2	7	1	0	2	8	26
탈모치료술 등	205	247	376	563	94	53	371	837	1,349
문신술 등	41	35	23	22	1	2	7	30	301
지방용해술	127	250	239	146	21	3	46	309	1,431
피부재생술 등	1,212	1,436	2,023	2,328	373	78	1,009	6,140	33,112
기타	1,890	2,320	3,998	7,009	1,432	265	3,348	19,173	49,809
전체	9,171	12,149	16,084	22,750	4,471	925	12,483	44,471	117,309

주: 사업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표 II -9>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및 환급액 비중(2024년)

(단위: %)

의료용역	환급건수	환급액
쌍꺼풀수술	3.7	5.5
코성형수술	0.6	3.4
유방수술	0.2	1.3
지방흡입술	0.9	3.6
주름살제거술	6.5	8.4
안면윤곽술	0.6	3.0
치아성형술	0.2	0.4
악안면교정술	0.1	0.4
색소모반 등 치료술	0.8	0.5
여드름 치료술	0.2	0.1
제모술	0.0	0.0
탈모치료술 등	0.3	1.1
문신술 등	0.6	0.3
지방용해술	1.9	1.2
피부재생술 등	29.9	28.2
기타	53.7	42.5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한편 코성형수술, 유방수술, 안면윤곽술 등의 건당 환급액이 높은 반면, 제모술, 문신술 등의 건당 환급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10> 참조)
 - 2024년 기준 유방수술의 건당 환급액은 99.5만원으로, 전체 환급대상 의료용역 중 가장 높음
 - 반면 문신술 등의 건당 환급액은 4.7만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 의료용역 중 가장 낮음
 - 환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부재생술 등의 건당 환급액은 2024년 기준 10.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주름살제거술 및 쌍커플수술의 건당 환급액은 2024년 기준 각각 14.7만원과 17.1만원 수준임

<표 II -10> 의료용역별 건당 환급액

(단위: 만원)

의료용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쌍커플수술	21.4	22.5	30.9	15.9	20.4	20.1	27.4	22.7	17.1
코성형수술	46.3	47.3	50.1	33.5	35.3	40.8	57.8	67.5	67.0
유방수술	82.1	93.0	93.7	33.5	31.5	76.6	93.1	109.6	99.5
지방흡입술	49.9	59.2	55.8	37.4	32.9	40.8	35.4	44.8	48.3
주름살제거술	33.8	31.2	21.1	10.1	12.2	26.0	23.6	14.4	14.7
안면윤곽술	89.6	91.6	93.8	82.3	75.1	79.9	90.3	107.0	61.6
치아성형술	13.4	12.5	28.9	12.6	10.4	287.5	33.3	30.4	22.0
악안면교정술	147.3	154.4	144.7	108.4	115.2	25.0	109.5	127.3	58.2
색소모반 등 치료술	6.1	6.1	5.6	5.7	5.1	5.5	6.8	6.5	7.5
여드름 치료술	7.0	8.4	9.2	6.2	5.3	0.0	6.6	6.5	6.9
제모술	5.1	6.0	3.8	6.0	8.3	0.0	5.3	8.8	6.6
탈모치료술 등	43.2	42.5	45.9	50.4	45.4	54.1	63.2	59.4	47.0
문신술 등	9.2	8.7	7.3	5.3	2.5	10.5	3.6	3.2	4.7
지방용해술	16.7	22.1	22.9	16.2	23.1	11.5	17.8	6.4	7.3
피부재생술 등	11.7	9.2	9.2	11.5	10.3	15.6	13.8	11.7	10.7
기타	18.9	13.5	12.2	10.8	10.1	18.5	13.6	7.4	9.0
전체	22.5	21.7	19.0	15.3	15.9	26.4	22.9	11.6	11.4

주: 사업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계산

2) 외국인 환자 국적별

- 2020~2024년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건수 및 환급액 추이는 <표 II-11> 및 <표 II-12>에 각각 제시되어 있음
 - 2024년 환급건수를 기준으로 일본 국적 외국인 환자가 전체 환급건수의 4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표 II-13> 참조)
 - 중국 국적 외국인 환자(26.0%) 및 대만 국적 외국인 환자(9.3%) 비중도 높은 편
 - 2024년 환급액 기준으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 환자가 전체 환급액의 2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표 II-13> 참조)
 - 일본 및 대만 국적 외국인 환자의 환급액 비중은 각각 20.8%와 8.4% 수준임
 - 이상의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실적 통계는 동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본, 중국 등 특정 국적 외국인 환자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 줌
 - 일본과 중국은 가장 인접한 국가들이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됨

<표 II -11>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건수

(단위: 건)

국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본	16,748	147	13,701	195,360	445,143
중국	6,917	604	5,267	62,698	263,484
대만	413	21	830	13,673	93,776
미국	1,439	1,248	6,607	26,682	57,637
싱가포르	334	99	2,500	12,895	30,090
태국	2,747	41	8,725	26,660	29,334
대한민국	827	604	1,968	6,065	13,964
호주	255	17	847	5,172	12,143
캐나다	328	115	1,549	5,207	12,078
인도네시아	187	6	737	3,636	8,707
말레이시아	138	8	710	2,514	6,633
영국	85	43	320	1,528	4,582
프랑스	32	16	197	1,241	3,721
필리핀	55	7	161	1,169	3,368
몽골	97	18	301	762	1,707
기타	849	204	2,612	9,992	26,568
전체	31,451	3,198	47,032	375,254	1,012,935

주: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총계와 불일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표 II -12>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금액

(단위: 백만원)

국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본	1,788	40	2,599	14,738	24,352
중국	1,376	99	1,418	9,340	29,912
대만	75	1	165	1,472	9,845
미국	501	475	2,433	3,763	9,225
싱가포르	59	34	536	1,484	3,143
태국	406	3	1,944	3,763	3,666
대한민국	146	137	442	1,099	1,976
호주	77	5	368	804	1,499
캐나다	68	25	421	802	1,522
인도네시아	103	1	616	2,030	3,675
말레이시아	46	4	312	489	853
영국	51	37	158	247	632
프랑스	10	8	48	116	236
필리핀	13	1	63	118	330
몽골	32	11	135	327	538
기타	382	108	1,509	4,180	25,906
전체	5,133	988	13,166	44,772	117,310

주: 1. 사업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2.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의료용역별 환금액 총계와 불일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표 II -13> 외국인 환자 국적별 환급건수 및 환금액 비중(2024년)

(단위: %)

외국인 환자 국적	환급건수	환금액
일본	43.9	20.8
중국	26.0	25.5
대만	9.3	8.4
미국	5.7	7.9
싱가포르	3.0	2.7
태국	2.9	3.1
대한민국	1.4	1.7
호주	1.2	1.3
캐나다	1.2	1.3

<표 II -13>의 계속

(단위: %)

외국인 환자 국적	환급건수	환급액
인도네시아	0.9	3.1
말레이시아	0.7	0.7
영국	0.5	0.5
프랑스	0.4	0.2
필리핀	0.3	0.3
몽골	0.2	0.5
기타	2.6	22.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한편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 외국인 환자의 건당 환급액이 높은 반면, 일본, 중국 국적 외국인 환자의 건당 환급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14> 참조)
 -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환자의 건당 환급액은 42.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반면 일본 국적 외국인 환자의 건당 환급액은 5.5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환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국적 외국인 환자의 건당 환급액은 2024년 기준 11.4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건당 환급액(11.6만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건당 환급액이 10.7만원(2024년 기준)인 피부재생술 등의 의료용역 소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국적 외국인 환자가 다수일 것으로 짐작 가능
 - 외국인 환자 국적별 건당 환급액 차이는 외국인 환자 국적에 따라 의료용역 수요에 편차가 있음을 시사
 - 자국 내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가격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 가능

<표 II -14> 외국인 환자 국적별 건당 환급액

(단위: 만원)

국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본	10.7	27.2	19.0	7.5	5.5
중국	19.9	16.4	26.9	14.9	11.4
대만	18.2	4.8	19.9	10.8	10.5
미국	34.8	38.1	36.8	14.1	16.0
싱가포르	17.7	34.3	21.4	11.5	10.4

<표 II -14>의 계속

(단위: 만원)

국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태국	14.8	7.3	22.3	14.1	12.5
대한민국	17.7	22.7	22.5	18.1	14.2
호주	30.2	29.4	43.4	15.5	12.3
캐나다	20.7	21.7	27.2	15.4	12.6
인도네시아	55.1	16.7	83.6	55.8	42.2
말레이시아	33.3	50.0	43.9	19.5	12.9
영국	60.0	86.0	49.4	16.2	13.8
프랑스	31.3	50.0	24.4	9.3	6.3
필리핀	23.6	14.3	39.1	10.1	9.8
몽골	33.0	61.1	44.9	42.9	31.5
기타	45.0	52.9	57.8	41.8	97.5
전체	16.3	30.9	28.0	11.9	11.6

주: 1. 사업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2. 집계 방식의 차이로 <표 II-6>의 연도별 건당 환급액과 불일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계산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이하 열거된 순으로 「부가세 환급 특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
 - 첫째,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 최근 변화된 정책 환경에 주목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검토
 - 둘째, 지원방식의 적절성
 -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등의 측면에서 「부가세 환급 특례」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
 - 셋째, 유사·중복의 가능성
 -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부지원 현황을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유사·중복의 문제를 점검

1. 지원의 타당성

- 본 절에서는 「부가세 환급 특례」를 통한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내지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평가
 - 우선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최근까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점검
 - 이후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선택·이용한 사유를 검토
 - 끝으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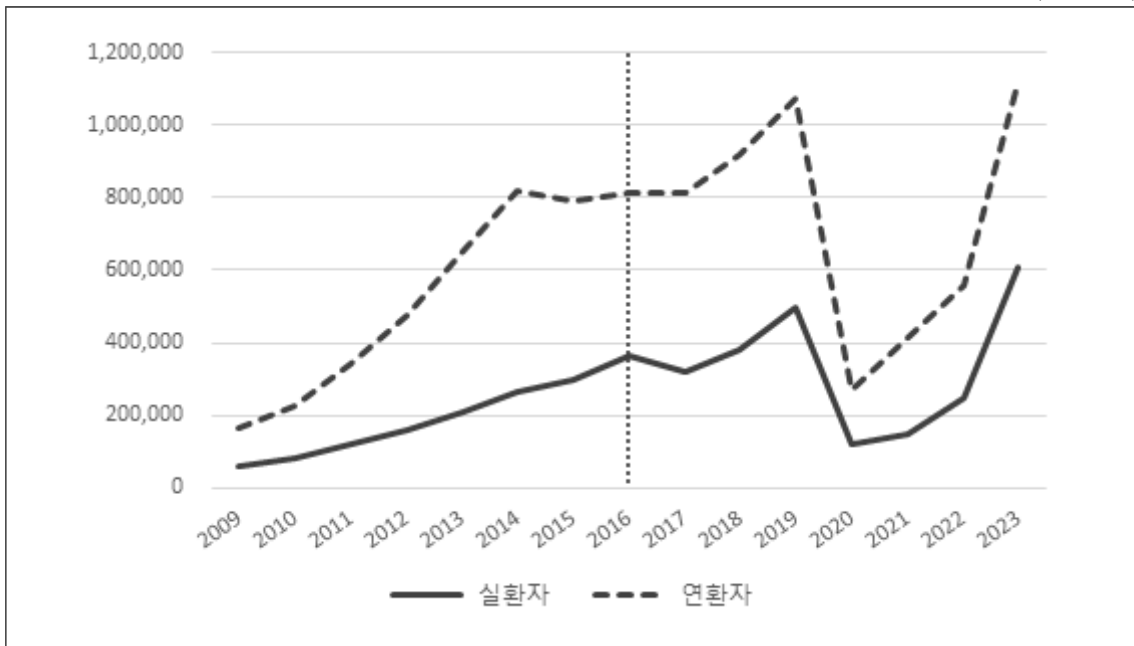
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부가세 환급 특례」는 의료·보건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이하에서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살펴봄
 - 동 제도가 실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세수에 미친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제Ⅳ장에서 수행

- 2009~2023년 외국인 환자 수 추이는 [그림 III-1]에 도해되어 있음
 - 실환자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환자 수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 급감
 -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2023년 현재 60만 5,768명을 기록
 - 연환자 기준으로는 2023년 111만 7,112명을 기록

[그림 III-1] 외국인 환자 수 추이: 2009~202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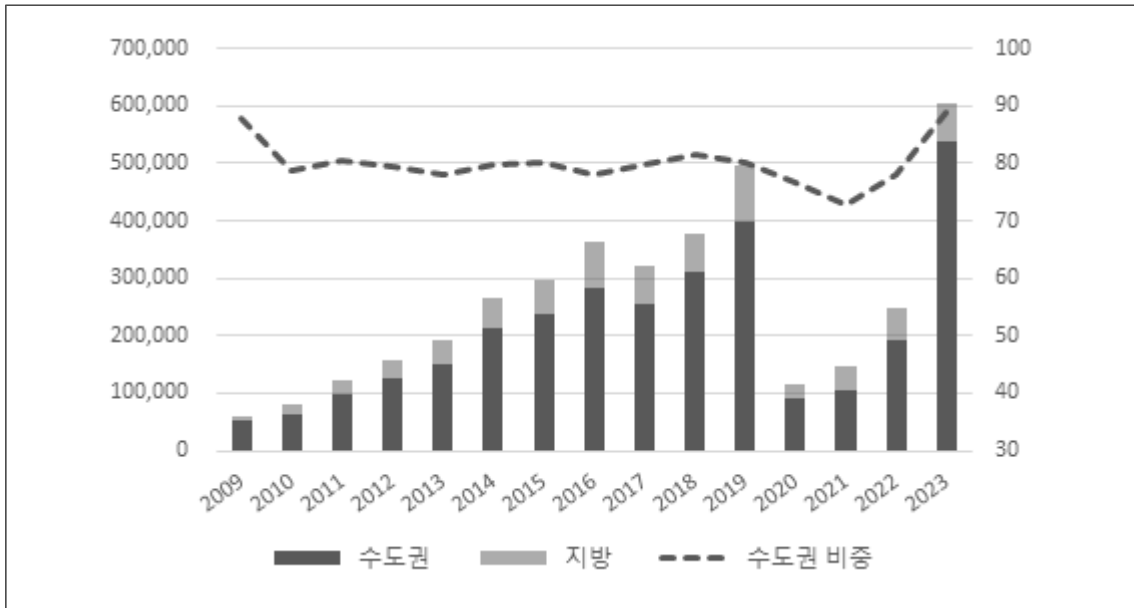
- 주: 1. 실환자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실인원으로서 중복내원 횟수가 제외되어 산출
- 2. 연 환자는 환자 1명이 복수의 외래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모든 진료일수 및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국제의료정보포털,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https://www.medicalkorea.or.kr/ghip/frgnrPatnt>, 검색일자: 2025. 8. 3.

- 2009~2023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는 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2] 참조)
 -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의 80% 정도가 수도권을 방문
 - 2023년에는 그 비중이 88.9%까지 높아짐
 - 이는 의료기관 접근성 및 밀집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됨

[그림 III-2] 지역별 외국인 환자 수 추이: 2009~2023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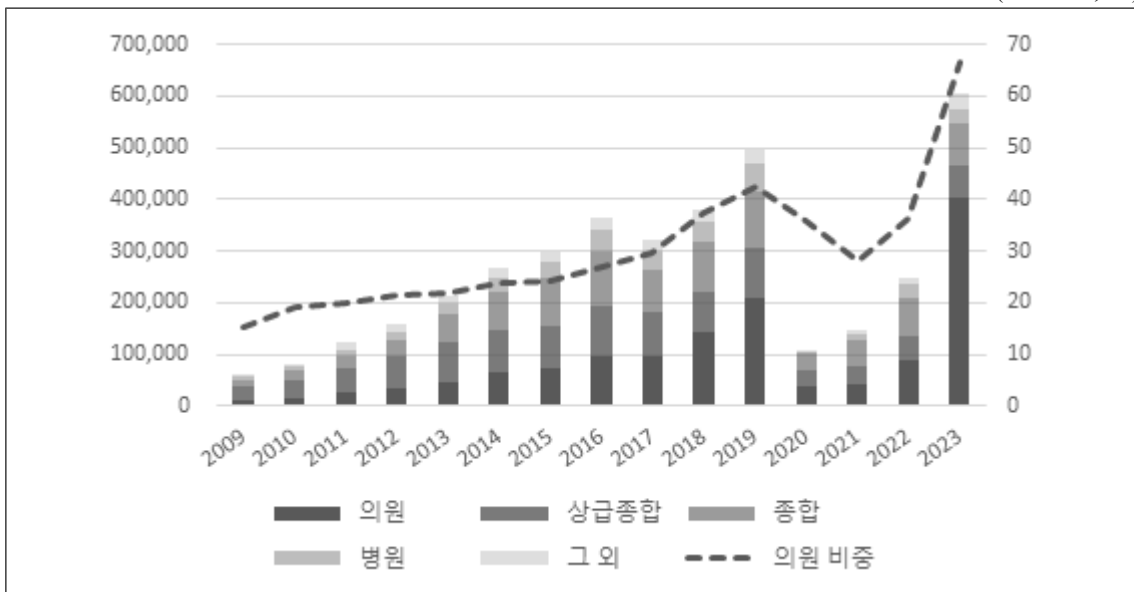
주: 1. 실환자 기준

2.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방은 그 외 지역

자료: 국제의료정보포털,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https://www.medicalkorea.or.kr/ghip/frgnrPatnt>, 검색일자: 2025. 8. 3.

[그림 III-3]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 추이: 2009~2023년

(단위: 명, %)



주: 1. 실환자 기준

2. 그 외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기타(요양)

자료: 국제의료정보포털,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https://www.medicalkorea.or.kr/ghip/frgnrPatnt>, 검색일자: 2025. 8. 3.

- 한편 외국인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들 중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됨([그림 III-3] 참조)
 - 2009년 외국인 환자의 의원 방문 비중은 15.4%였으나, 2023년 현재 66.5%로 해당 기간 51.1%p 증가함
 - 이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급증(제IV장 참조)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용역 수요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

나. 외국인 환자 방문 사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선택한 목적과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외국인 환자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환자의 선호를 파악¹²⁾
- 2023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문의 주된 목적이 “경증 치료 또는 미용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증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26.6%)의 비중도 상당한 편
 - 반면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아닌 그 밖의 목적”(6.3%), “의료서비스 이용이 아닌 관광 목적”(6.0%)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동 조사상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선택 시 고려요소를 묻는 문항에서 다수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특정 병원, 의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응답함
 - 해당 응답 비중은 60.8%로, “국가(한국)” 응답 비중(39.2%)보다 21.6%p 높음
 - “한국”이라는 집합적 경쟁력에 비해 각 의료기관 또는 개별 의료진의 경쟁력이 외국인 환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

12) 2025년 7월 현재 2024년 결과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2021~2023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함.

- 나아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고려요소를 묻는 문항에서 “의료진 의료기술” 응답 비중이 28.9%(2023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표 III-1> 참조)
 - 2021년(33.2%) 및 2022년(36.4%) 조사에서도 “의료진 의료기술”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지목됨
 - “의료 장비 및 시설”, “의사소통 편의성”, “빠른 진료 예약”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언급되었으나, 그 비중은 높지 않은 편
 - 한편 “의료비”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5% 정도임
 - 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

<표 III-1>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고려요소

(단위: %, 명)

고려요소 ¹⁾	2021	2022	2023 ²⁾
의료진 의료기술	33.2	36.4	28.9
의료 장비 및 시설	8.9	9.8	16.7
의사소통 편의성	6.1	4.8	9.3
빠른 진료 예약	3.2	6.0	8.1
의료비	-. ³⁾	5.5	4.5
기타 ⁴⁾	48.6	37.5	32.5
응답자 수	506	1,200	1,500

주: 1) 2021년과 2022년에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으나 1순위만 집계

2) 2021년 및 2022년 문항(한국 의료서비스 선택 시 고려요소)과 다소 차이

3) 2021년 당시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집계된 것으로 보임

4) 치료 결과 및 효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 한국 의료기관 신뢰, 주변 추천, 위치 및 접근성, 과거 이용 경험 등을 포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만족도 조사』, 각 연도.

- 끝으로 “지불 의료비가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외국인 환자는 82.3%(2023년 기준)로, 우리나라 의료용역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만족도는 높은 편
 - “자국 대비 한국 의료비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외국인 환자도 74.9%에 달함
 - 단 우리나라 방문 전 이미 의료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 환자만 응답자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 시 유의가 필요

다. 해외 주요국 사례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세 환급 특례」의 환급대상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임
 - 이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를 우선 검토
 - 이후 「부가세 환급 특례」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 해외 주요국의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는 <표 III-2>에 요약·제시되어 있음¹³⁾
 - EU는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며, 미용성형 역시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됨
 - 영국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
 -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을 포함한 모든 의료용역에 면세가 적용됨

-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세 환급 특례」와 유사하게 외국인관광객에 한하여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면제)해 주는 제도 운영은 확인되지 않음¹⁴⁾
 - 튀르키예,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환급해주는 사례가 확인되나, 「부가세 환급 특례」와 같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한해 운영되는 방식은 아님
 - 한편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면제해 주고 있으나, 「부가세 환급 특례」의 유사 사례로 간주되기는 어려움

13) 정규언(2010)을 참조한 것으로, 2025년 현재 각 국가·기구의 의료용역·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는 <표 III-2>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

14) <부록 2> 참조

<표 III-2> 해외 주요국의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

국가·기구	의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
OECD	• medical care를 표준면세로 규정	• 규정 없음
EU	• 치료·예방 목적의 medical care에 한하여 면세됨	•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 • 미용성형도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 •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영국	• 2007년 위와 동일하게 개정	•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 • 미용성형도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
독일	• medical work에 대하여 면세	
프랑스	• medical care에 대하여 면세	
네덜란드	• medical care에 대하여 면세	•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면세
오스트리아	• 의사의 공급(supplies made by doctors)에 대하여 면세	

주: 정규언(2010)의 작성 시점 기준으로, 2025년 현재 각 국가·기구의 의료용역·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여부는 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정규언(2010), p. 253.

라. 소결

- 「부가세 환급 특례」는 의료·보건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외국인 환자 수가 급증한 현 시점에서의 운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 20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상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는 2024년 조기 달성됨
 - 따라서 동 제도 도입·운영의 목적은 2025년 7월 현재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가능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특례제도로서의 운영 기간 역시 상당하였음
- 한편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의 중요도가 의료진 의료기술 등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국가에서 동 제도와 유사한 환급 특례를 운영하는 사례 등도 확인되지 않음
 -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비추어 볼 때, 피부과·성형외

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환자 수 급증은 우리나라 화장품 등에 대한 높은 호감도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됨¹⁵⁾

- 아울러 EU·영국 등은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와 유사한 환급 특례 등의 운영은 확인되지 않음

□ 끝으로 동 제도 도입·운영으로 내국인·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세수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도 지적될 필요

- 나아가 동 제도의 장기간 운영 시 미용·성형 부문으로의 의료자원 쏠림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불균형이 초래될 여지가 있음도 언급될 필요

2. 지원의 적절성

□ 본 절에서는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등의 측면에서 「부가세 환급 특례」 지원·운영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¹⁶⁾

- (정책대상)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로 동 제도의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바,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정책수단) 의료관광객 유치 및 해당 산업 지원에 있어 조세지원(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

가. 정책대상 측면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 받은 외국인관광객은 해당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 이때 동 제도가 적용되는 특례적용의료기관, 환급대상 의료용역,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주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4. 3.)

16) 「부가세 환급 특례」의 설계·운영 측면에서 세법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견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책설계 측면에서의 적절성은 이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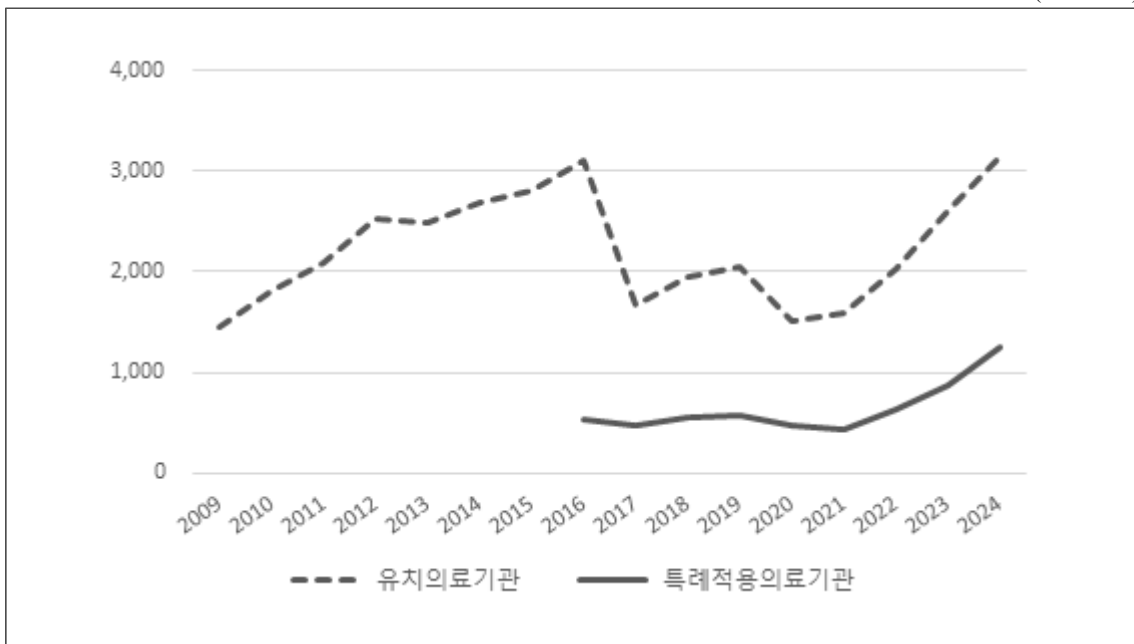
□ 우선 특례적용의료기관의 범주는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부가세 환급 특례」상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동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례적용의료기관의 범주를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음

- 특례적용의료기관의 범주 확대 시 동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외국인 환자 수 급증으로 내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될 여지도 존재하는바, 특례적용의료기관의 범주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4년 현재 유치의료기관은 3,155개, 특례적용의료기관은 1,259개로 확인되는바([그림 III-4] 참조),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표 III-3> 참조) 대비 그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님

[그림 III-4]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특례적용의료기관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표 III-3>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기관 수(2020년)

(단위: 개)

보건의료기관 종류	기관 수	인구 100만명당 기관 수
전체	96,742	1,866.6
상급종합	42	0.8
종합병원	319	6.2
병원	1,515	29.2
요양병원	1,582	30.5
의원	33,115	638.9
치과병원	235	4.5
치과의원	18,261	352.3
조산원	18	0.3
보건소	241	4.6
보건지소	1,317	25.4
보건진료소	1,903	36.7
보건의료원	15	0.3
한방병원	410	7.9
한의원	14,464	279.1
약국	23,305	449.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20.

- 한편 환급대상 의료용역의 범주 조정 필요성 역시 높지 않음
 - 「부가세 환급 특례」상 환급대상 의료용역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의료용역임
 - 해당 의료용역들의 주된 목적은 치료·예방·보건·회복이 아닌 미용·성형으로, 동 제도의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 한편 의료용역 범주를 넘어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미용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등도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이 소비하는 타 용역과의 형평성 및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개정방향으로 평가하기 어려움¹⁷⁾

17) 김경호(2023. 11.) 참조

- 끝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 10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 거주자로 정의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동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수단 측면

- 「부가세 환급 특례」는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은 부가가치세가 재화와 용역이 실제 소비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
 - 해당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음
 - 이는 국내에서 소비된 용역의 경우 해당 소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을 의미
 -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는 동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¹⁸⁾
 - 이에 따라 정다운 외(2020)는 동 제도의 장기적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음

다. 소결

- 이상에서 「부가세 환급 특례」 지원·운영 방식의 적절성을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등의 측면에서 평가
 - 정책대상 측면에서 동 제도의 적절성은 일정 수준 인정됨
 - 반면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된 용역의 경우 해당 소비

18) 이와 관련하여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실질적인 소비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인관광객의 본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일반적인 해석이라 보기는 어려움.

- 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동 제도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원리에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동 제도의 장기적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지원의 중복성

- 본 절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부지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유사·중복의 가능성을 검토
- 세제지원 측면에서 동 제도와 유사 목적을 지닌 제도는 발견하기 어려움
 - 가령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의 환급대상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허용하고 있는바,¹⁹⁾ 동 제도와 중복성보다 보완성이 두드러짐
 -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을 위해 면세 사업자 또는 판매장에서 구입한 재화 또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역시 동 제도와 유사·중복성은 낮은 편

<표 III-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제107조의2(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9) <표 III-6>, <표 III-7>, <표 III-8> 참조

<표 III-4>의 계속

-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4. 1. 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5. 7. 26.

<표 III-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0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숙박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9. 11., 2018. 2. 13., 2022. 2. 15., 2024. 2. 29., 2025. 2. 28.>
 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2.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③~⑫ 생략

[본조신설 2014. 2. 2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색일자: 2025. 7. 26.

<표 III-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환급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환급액	15	15	-	-	23	48	28	1	2	5	6	17

주: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한편 재정지원 측면에서도 「부가세 환급 특례」와 유사·중복성이 높은 제도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가령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해 44억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²⁰⁾ 동 제도와의 연관성은 제한적임
 - 나아가 손종필(2025)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2025년 지자체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총 100억원 수준이나, 동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끝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제26조) 및 과태료(제31조) 등의 제재가 존재하는바(<표 III-7> 참조), 동 제도와의 보완성이 확인됨

<표 III-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1조

제26조(과징금)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

20) 보건복지부(2025. 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III-7>의 계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2023. 3. 28.>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_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검색일자: 2025. 7. 26.

4. 요약 및 소결

- 본 장에서는 정부 개입의 타당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유사·중복의 가능성 측면에서 「부가세 환급 특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
 - (제도 운영의 필요성) 「부가세 환급 특례」는 의료·보건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일정 수준 인정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 기간을 고려할 필요
 - 20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상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는 2024년 조기 달성된바, 동 제도 도입·운영의 목적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가능
 - 한편 동 제도 도입·운영으로 내국인·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세수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그간 운영 기간 역시 상당하였음
 - 참고로 EU·영국 등은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와 유사한 환급 특례 등의 운영은 확인되지 않음
 - (지원방식의 적절성)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동 제도가 적용되는 특례적용의료기관, 환급대상 의료용역, 외국인관광객의 범주는 대체로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원리인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유사·중복의 가능성) 동 제도와 유사 목적을 지닌 조세·재정 지원들은 발견하기 어려움

- 가령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의 경우 중복성보다 보완성이 두드러짐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세수 측면에서 「부가세 환급 특례」 도입·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함
 - (효과성 분석 1)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 동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이므로,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
 - (효과성 분석 2) 의료기관 진료수입 자료 및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여 동 제도가 세수에 미친 영향 역시 정량적으로 평가
 -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역시 본 제도의 도입·운영 목적 중 하나이므로 세수 효과 추정을 통해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

1.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가. 분석 개요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세 환급 특례」의 환급 실적은 COVID-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 제도 시행 이후 COVID-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면 한 해도 예외 없이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양적으로 증가

- 그러나 해당 부가세 환급건수 및 환급액 증가를 동 제도의 효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제도의 실효적인 기여 없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의 상승으로 인해 환급실적의 양적 증가가 관찰되었을 가능성 존재
 - 이러한 가설이 참일 경우 동 제도가 없었더라도 외국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소비 증가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 존재

- 이 경우 동 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의 정책 효과를 발현시킨 가운데 세수만 감소시켰을 가능성 존재

□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결과 변수(의료용역 이용 규모)가 제도가 미도입된 가상적 상황(counter-factual case) 대비 얼마나 변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 추정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제도 도입 전후 적합한 대조군(control group) 대비 미용·성형 의료용역 이용 규모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
 - 정다운 외(2020)는 ① 피부과·성형외과 이용 내국인 ② 평행 추세 가정을 만족하는 내과통합 진료과목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
 - 각각 내국인에게 정책이 미적용된다는 점(통제집단: 내국인 이용), 정책 도입 전 유사한 이용 흐름이 관찰된다는 점(통제집단: 내과통합)을 근거로 함

□ 추가적인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method)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 추정치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준실험설계에서 이상적인 대조군 선정이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추정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다양한 실험 설계를 통해 유사한 정책 효과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정된 정책 효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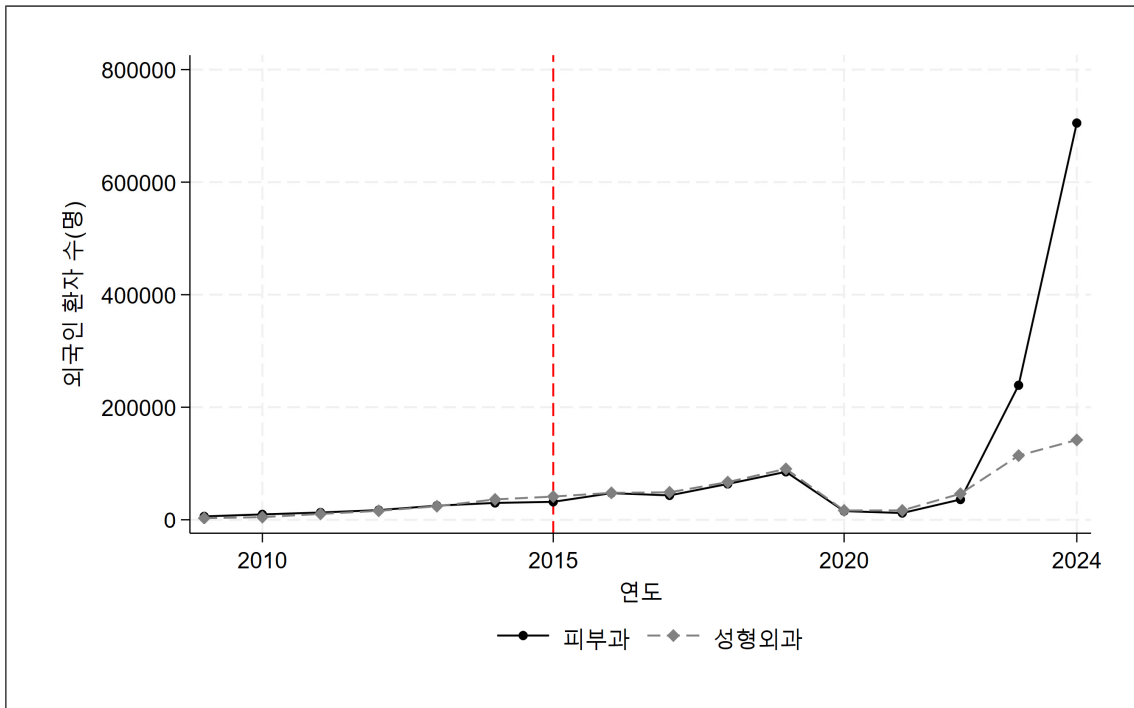
□ 기존 「부가세 환급 특례」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동 제도의 효과성 식별을 실증 분석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세제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진료과(피부과·성형외과)의 대조군을 정다운 외(2020)와 달리 합성대조법을 활용하여 구성
 - 정다운 외(2020)에서는 제도 도입 전 평행 추세 가정을 만족하는 특정 진료과(내과통합)를 대조군으로 선정하고 비교하였으며, 해당 가정은 추세를 표현한 그림을 통해 확인
 - 본 연구는 Abadie and Gardeazabal(2003), Abadie et al.(2010)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최근 실증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합성대조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하여 대조군을 구성하고 정책 효과를 추정

나. 분석 방법

- 세계 혜택의 대상이 된 진료과(피부과·성형외과)와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수 및 의료비 지출 등 의료용역 이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성 분석의 큰 틀
 - 동 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한 정다운 외(2019), 이동희·고대영(2024) 등도 세계 혜택 대상 진료과(처치군)와 타 진료과(대조군)의 의료용역 이용량을 제도 도입 전후로 비교하는 방식 활용
 -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이 자연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는 효과성 분석 모형임

[그림 IV-1] 피부과·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수 추이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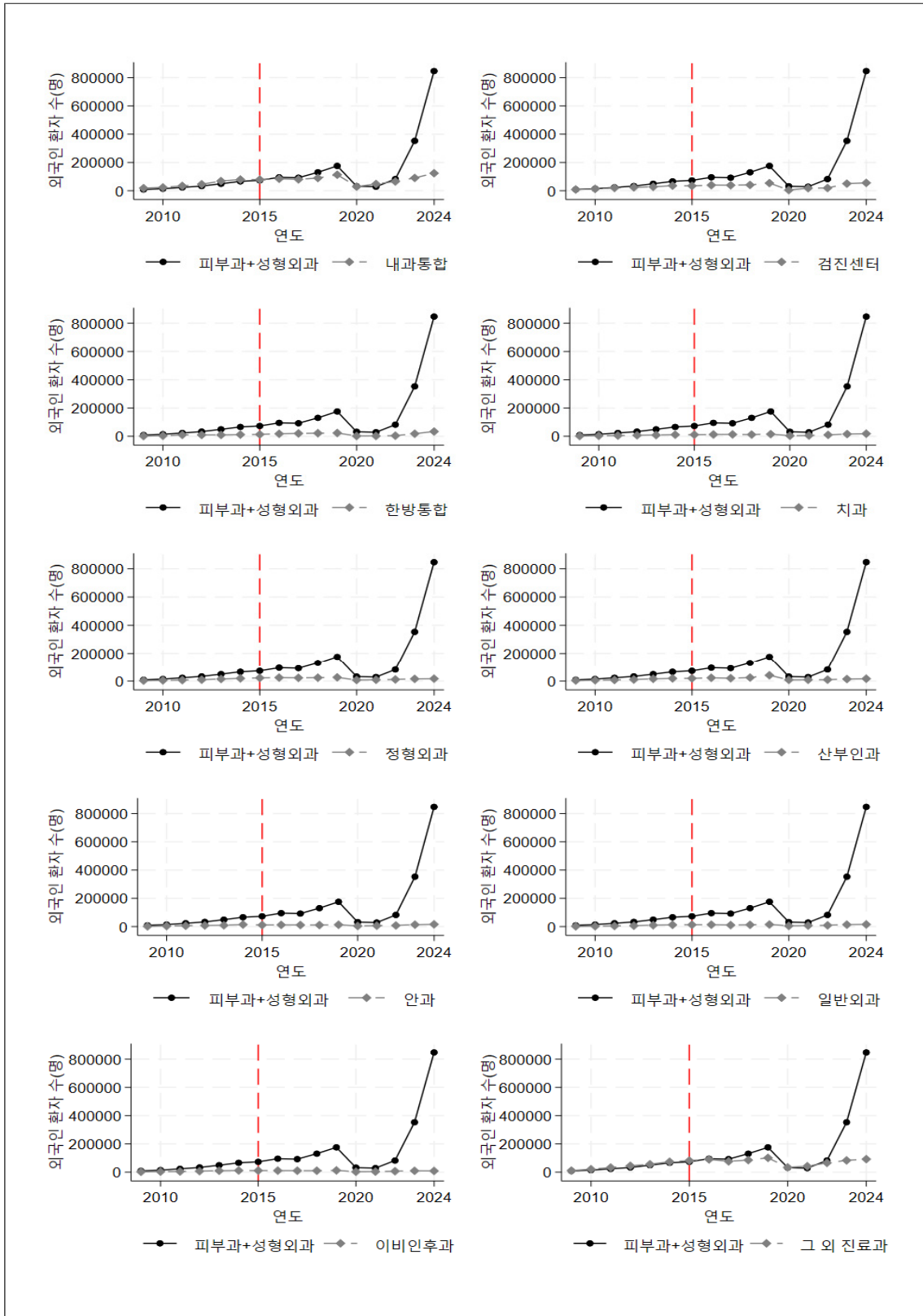
- 이중차분법을 통해 추정된 정책 효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처치군(treatment group)인 피부과·성형외과와 대조군(control group)인 타 전문과의 제도 도입 전 추세의 동질성(parallel trend)이 확보되어야 함
 - 처치군에 속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인

2015년까지 매우 유사한 외국인 환자 수 추세를 보이므로([그림 IV-1] 참조), 두 진료과의 정보를 합쳐 하나의 처치군으로 간주

- 이중차분법 추정의 핵심은 처치군의 반사실적 추세를 나타내는 대조군의 확보로, 기존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대조군을 선정함
 - 정다운 외(2019)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전 외국인 환자 수 및 진료수입 추세를 확인하여 타 진료과 중 내과통합이 처치군과 가장 유사한 추세를 따른다는 판단하에 해당 진료과를 대조군으로 설정
 - 이동희·고대영(2024)은 타 진료과의 환자수 및 진료수입 전체 합계를 대조군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합계 대조군이 평행 추세 가정을 만족한다는 판단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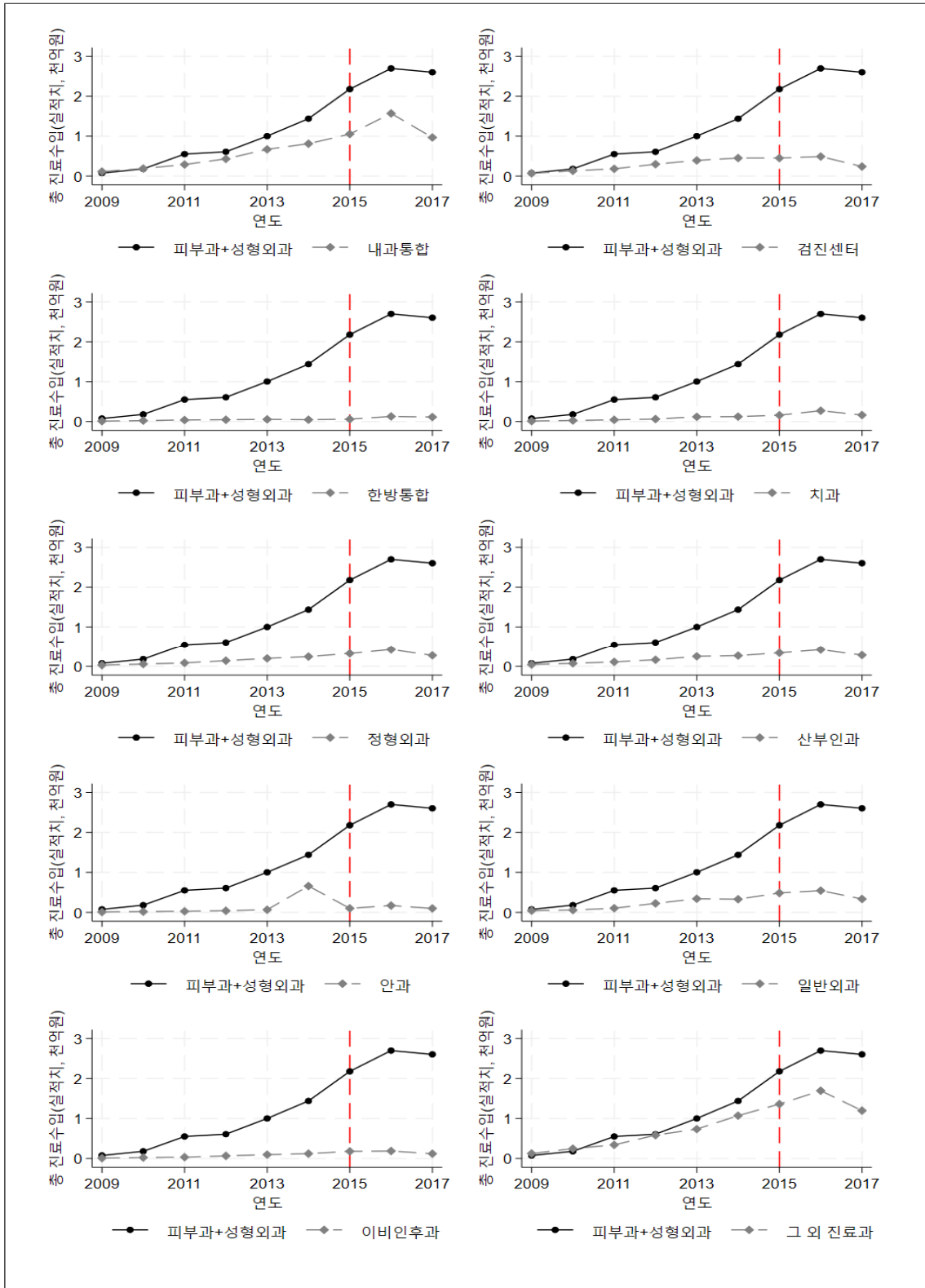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Abadie et al.(2010) 등에서 제안한 합성대조법을 활용하여 동 제도 도입 전 처치군과 유사한 추세를 지닌 가상의 대조군을 생성, 해당 대조군과 처치군의 제도 도입 전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잠재적으로 대조군에 포함될 수 있는 진료과들의 외국인 환자 수 및 진료수입 정보를 처치군과 육안으로 비교할 경우 진료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추세가 관찰됨([그림 IV-2] 및 [그림 IV-3] 참조)
 - 이동희·고대영(2024)과 같이 회귀모형을 통해 각 집단 간 추세를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으나, 평행 추세 가정에 부합되는 대조군을 Abadie et al.(2010) 등의 방식을 따라 정량적으로 생성하는 방식도 가능

[그림 IV-2]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수 비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IV-3]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비교



주: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자료는 2018년 이후 집계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Abadie et al.(2010)에 따르면, 대조군에 속할 수 있는 후보들(donors)에 적당한 가중치(ω_j)를 부여하여 합성하면 가상의 대조군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가중치는 처치군의 결과 변수 및 통제 변수의 처치 전 값과 가중치를 적용한 가상의 대조군의 결과 변수 및 통제 변수의 처치 전 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수식으로 표현하면, 대조군이 될 수 있는 후보들 G 개의 가중치 $\{\hat{\omega}_1, \hat{\omega}_2, \dots, \hat{\omega}_G\}$ 는

$$\min_{\omega_1, \omega_2, \dots, \omega_G} \left\| X_0 - \sum_{g=1}^G \omega_g X_g \right\| \text{의 해가 됨}$$

- X_0 는 처치군의 결과 변수 및 관찰 가능한 통제 변수들의 행렬
- X_g 는 대조군 후보 g 의 결과 변수 및 관찰 가능한 통제 변수들의 행렬
- $\{\hat{\omega}_1, \hat{\omega}_2, \dots, \hat{\omega}_G\}$ 는 대조군 후보들의 가중 평균과 처치군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즉 처치군과 가상 대조군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중치 벡터
- 가중치의 합은 1이며, X_0 및 X_g 는 처치 전까지의 값이라는 제약하에서 최적 값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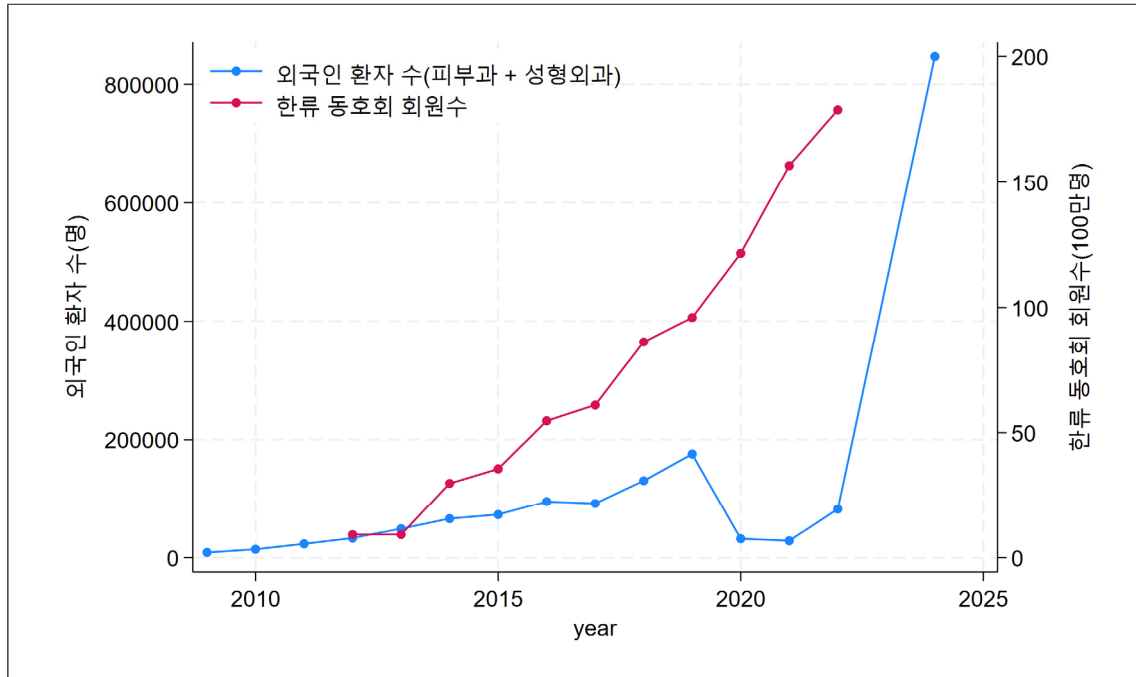
○ 요컨대 처치 전 대조군 후보들 간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처치군의 결과 변수 및 통제 변수의 추세와 가장 유사한 집단을 가상적으로 생성해내는 방식

□ 한편 평행추세 가정이 만족되도록 가상의 대조군을 생성하더라도 동 제도 도입 이후 처치군과 대조군 간 결과 변수의 차이를 모두 동 제도의 효과로 간주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

○ [그림 IV-1]~[그림 IV-3]에서 관찰되는 COVID-19 팬데믹 이후, 특히 피부과에서의 급격한 외국인 환자 수 증가 현상을 2016년 도입·운영되기 시작한 동 제도만의 효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우리나라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외국인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변수)로 정책 효과 외의 요소를 최대한 통제할 필요

[그림 IV-4]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수 및 전 세계 한류 동호회원 수 추이



자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2.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전 세계 한류동호회원 현황』, <http://kf.or.kr/koreanstudies/hallyu.do>, 검색일자: 2025. 6. 15.

- 본 연구는 이동희·고대영(2024)을 참조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파악한 연도별 한류 동호회원 수([그림 IV-4] 참조)²¹⁾를 설명 변수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연도별 고정효과를 추가로 포함시켜 다양한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
 - 이동희·고대영(2024)은 넷플릭스 등 OTT 경로를 통한 한류의 확산이 우리나라의 피부미용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충격에 주목하여, 정책 효과 추정 모형에 한류의 영향을 반영
 - [그림 IV-4]는 전 세계 한류 동호회원 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성형 외국인 환자 수 추이와 유사하게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 수와 진료수입 결과 변수를 (로그) 한류 동호회원 수 및 연도 고정효과로 선형 회귀한 후 산출된 잔차(residuals)를 활용하여 대조군과 처치군의 제도 도입 전후 차이를 확인

2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전 세계 한류동호회원 현황』, <http://kf.or.kr/koreanstudies/hallyu.do>, 검색일자: 2025.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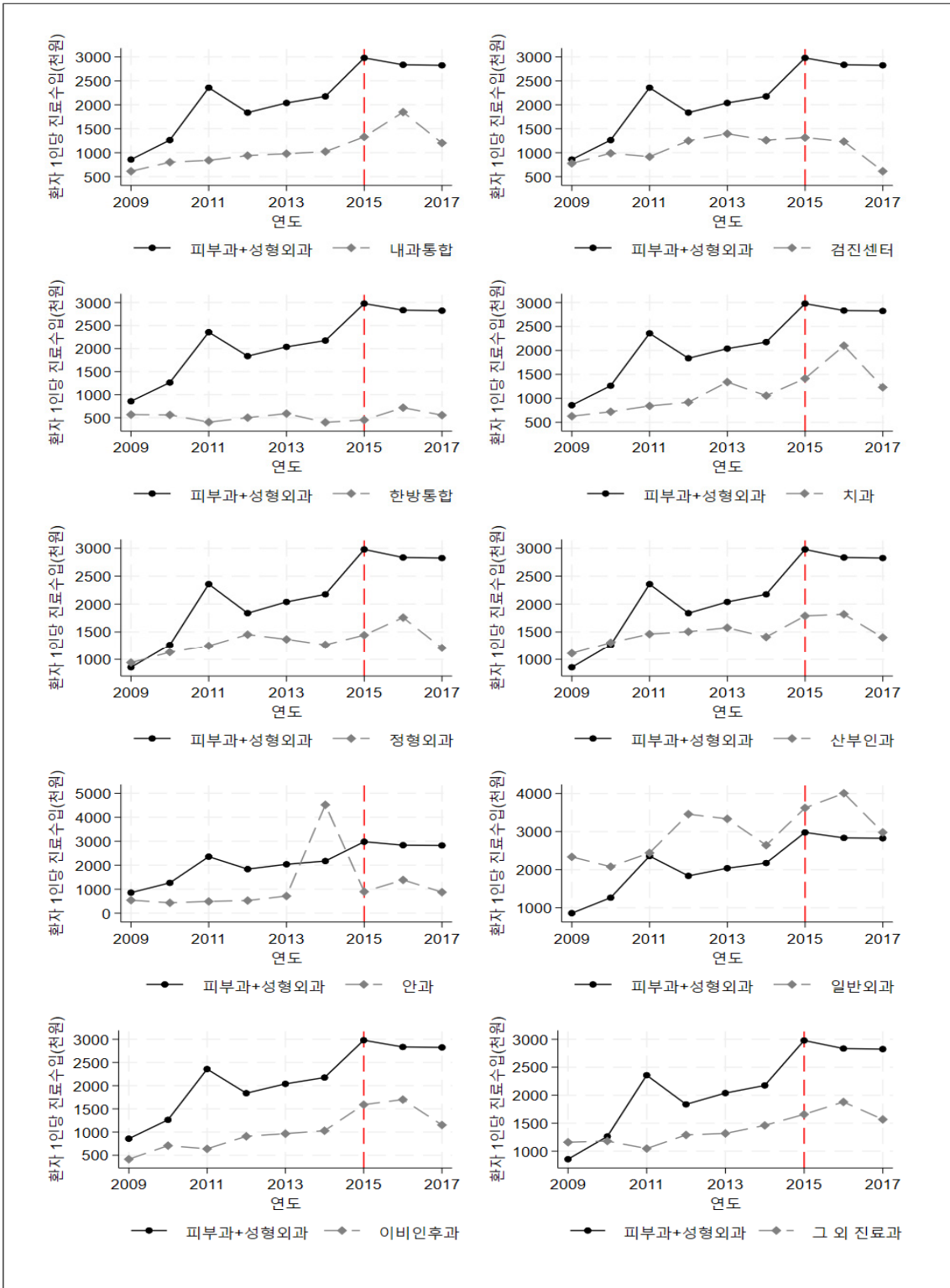
- 한류 영향 및 연도별 고유 효과 통제를 통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인들(COVID-19 등)을 최대한 통제 후, 잔차에 남아 있는 제도의 효과를 합성대조법을 활용한 이중차분법으로 식별하는 분석 전략 수립

다. 분석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효과성 분석에 필요한 연도별·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수(2009~2024년), 연도별·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2009~2017년) 자료를 구득
 - 진료과는 처치군에 포함될 2항목(피부과, 성형외과) 및 합성대조군에 포함될 10항목(내과통합, 검진센터, 한방통합,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그 외 진료과) 등 총 12항목으로 구분
 -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자료의 경우 2017년까지만 제공받아 효과성 분석에 제약이 있음²²⁾
 - 이동희·고대영(2024)과 같이 COVID-19 팬데믹 전후의 정책 효과 비교, 제도 도입 이후 진료수입을 활용한 장기간 정책 효과 분석 등이 어려움
- 따라서 자료의 가용 기간에 따라 COVID-19 전후의 장기 효과는 외국인 환자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진료수입은 제도 도입 이후 단기간(약 2년)의 효과를 보조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활용
- 외국인 환자 수 규모를 통해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제공받기로 결정한 외연(extensive margin) 효과를 장기 시계로 검토
 - 진료수입의 경우 외국인 환자 수로 나눠 환자 1인당 진료수입으로 환산 후 분석에 활용하는바, 이를 통해 내연(intensive margin) 효과를 단기간에 걸쳐 확인
 - 미용·성형 진료과의 1인당 진료수입은 2015년 이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정책이 도입된 2016년 이후 꺾이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그림 IV-5] 참조)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2018년 이후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자료는 부재함. 다만 정다운 외(2019)는 2018년까지의 진료수입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동희·고대영(2024) 역시 2009~2023년(2019년 제외, 2020~2023년은 불완전 자료) 진료수입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하 본 연구의 분석은 상기 연구들에 비해 제한적인 자료를 공유받은 상태에서 수행된 것임을 밝혀 둠.

[그림 IV-5]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비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분석 기간의 한계는 통계 변수로 활용하기로 한 한류 동호회원 수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개 자료는 2023년까지 존재
 -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외국인 환자 수 분석 기간은 2012~2023년,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분석 기간은 2012~2017년으로 각각 설정

- 이동희·고대영(2024)과 같이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의 결측치를 회귀모형을 통해 보간(imputation)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연구의 결측치는 2019년 한 해인 반면 본 연구의 결측치는 2018~2023년에 걸친 다년이므로, 동일하게 보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동희·고대영(2024)의 경우에도 2018년까지만 완전한 집계 자료를 활용하였고, 2020~2023년은 불완전한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수행

라. 분석 결과

1) 기본 분석

- 이하 모든 분석에서 외국인 환자 수 및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변수를 활용한 합성대조군이 원활하게 구성되어, 이하에서는 해당 결과 변수들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
 - 외국인 환자 전체 진료수입 변수는 합성대조군 구성 시 활용된 타 진료과(donor group) 중 1개 진료과에 100%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산출되는데, 해당 대조군이 공통 추세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

- 합성대조군 대비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COVID-19 팬데믹 시기 이전까지 대략 2만 7천명~8만 9천명의 외국인 환자가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더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 및 [그림 IV-6] 참조)
 - 합성대조법의 비모수 검정법(Abadie et al., 2015)에 따른 각 연도별 해당 추정치의 p 값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
 - 이는 2016년 이후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수가 타 진료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

- COVID-19 팬데믹 시기 피부과 및 성형외과는 타 진료과와 동일하게 외국인 환자 수 급감의 외생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2021년 팬데믹 시기에도 타 진료과에 비해 더디게 외국인 환자 수가 회복됨
 - 2020년 COVID-19 첫 해에는 처치군 및 합성대조군의 외국인 환자 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021년에는 타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수 회복에 비해 피부과·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수 회복이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음(추정치: △6,993.7명)
 -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진료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환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일본 등에서 COVID-19 팬데믹이 해당 시기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됨

- COVID-19 팬데믹 종료 시기인 2022년부터 외국인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합성대조군 대비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다시 추정되고 있음
 - 해당 시기 가파른 증가세는 타 진료과로 구성된 합성대조군 대비 COVID-19 팬데믹 종료 이후 급격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해당 증가세를 동제도의 순효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진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및 선호, 우리나라 화장품 등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석기간 외국인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 동 제도의 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기본 분석에서 엄밀히 분리하여 식별하기는 어려움

〈표 IV-1〉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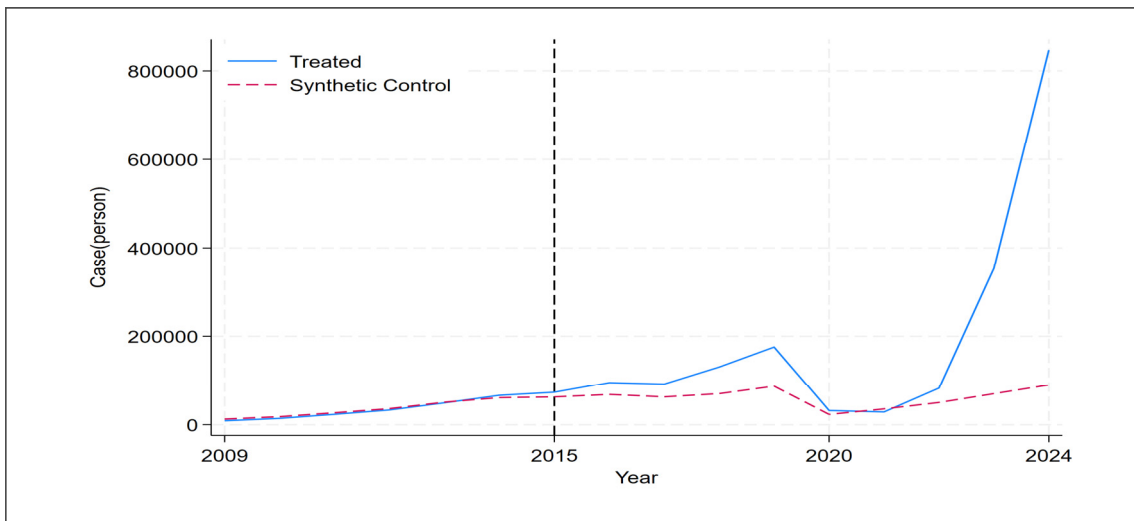
연도	외국인 환자 수 (명)	p-value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천원)	p-value
T+1(2016)	27,091.2	0.0	89.3	0.9
T+2(2017)	29,456.9	0.0	832.7	0.1
T+3(2018)	60,833.1	0.0	-	-
T+4(2019)	88,955.4	0.0		
T+5(2020)	8,847.3	0.1		
T+6(2021)	△6,993.7	0.0		

<표 IV-1>의 계속

연도	외국인 환자 수 (명)	p-value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천원)	p-value
T+7(2022)	32,490.8	0.0	-	-
T+8(2023)	283,335.3	0.0		
T+9(2024)	757,414.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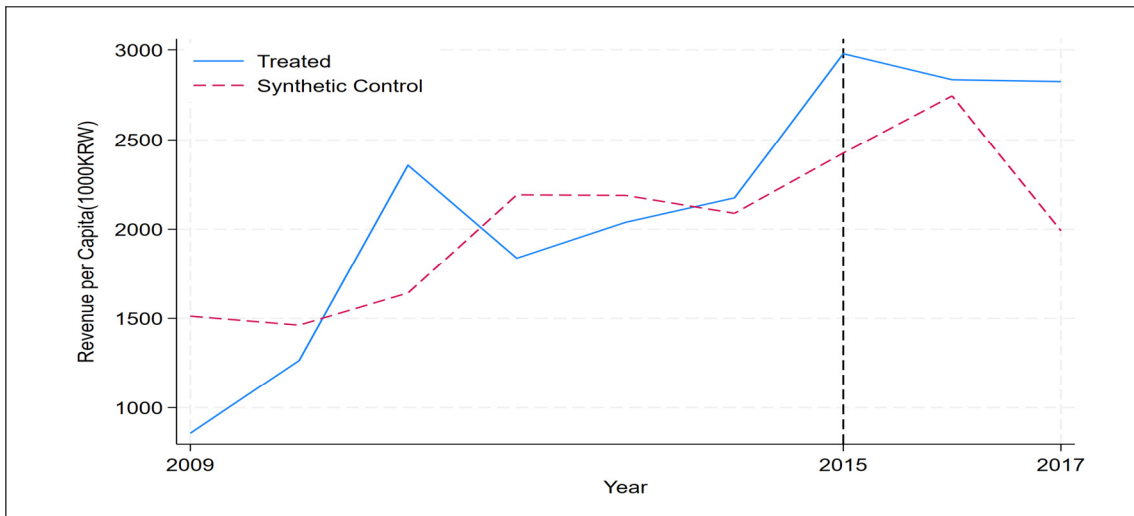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6]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외국인 환자 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7]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 한편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음(<표 IV-1> 및 [그림 IV-7] 참조)
 - 가설과는 달리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부가세 환급 특례」에 반응하여 진료량 이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미 한국을 방문한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는 임상적으로 가능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동 제도 도입 이전에도 충분히 선택하여 제공받고 있었으며, 동 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이 의료용역 이용량 증가(내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 거리가 가까워 주기적으로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한국 방문에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 이전부터 한국 방문 시 필요한 모든 의료용역을 이용한 이후 귀국했을 가능성 존재

2) 한류 효과 통제 시

- [그림 IV-4]에 제시된 것처럼 동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전 세계 한류 동호회원 수 효과를 제거한 후 합성대조군과 동일하게 비교한 결과, COVID-19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 수에 대한 동 제도의 효과는 기본 분석 대비 약 5.22~12.90% 감소하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IV-2> 및 [그림 IV-8] 참조)
 - 한류의 영향이 일정 수준 통제된 이후에도 동 제도 도입 이후 합성대조군 대비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
- 한류의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이후에도 COVID-19 팬데믹 시기 및 종료 이후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의 상대적 증가가 추정되는데, 이를 동 제도의 장기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
 - 특히 [그림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팬데믹 종료 이후 폭발적인 외국인 환자 증가는 피부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동일한 환급 혜택이 가능한 성형외과 대비 피부과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는 것은 한류 효과를 통제하였음에도 동 제도 외 다른 요인이 피부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
 - 따라서 동 제도의 효과성은 COVID-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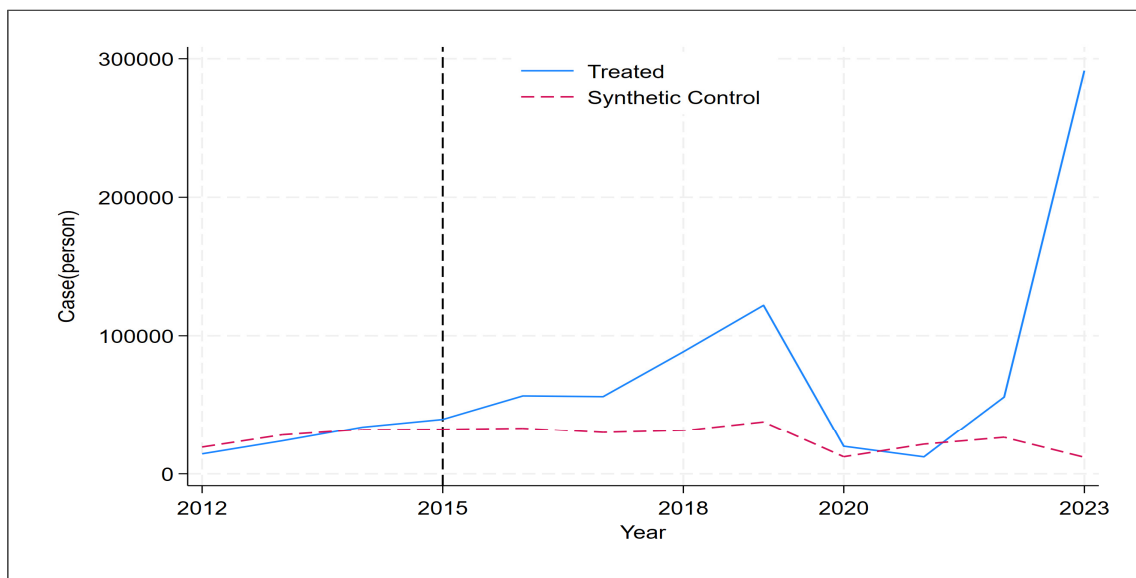
-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의 경우 한류의 영향 통제 이후 합성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동 제도를 통한 비용 감소에 반응하여 의료 용역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기본 분석의 결과와 유사

<표 IV-2>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한류 효과 통제 시

연도	외국인 환자 수 (명)	p-value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천원)	p-value
T+1(2016)	23,595.5	0.0	62.0	0.8
T+2(2017)	26,192.5	0.0	816.2	0.1
T+3(2018)	57,118.2	0.0	-	-
T+4(2019)	84,309.5	0.0		
T+5(2020)	7,506.1	0.1		
T+6(2021)	-9,121.9	0.0		
T+7(2022)	29,497.0	0.0		
T+8(2023)	279,59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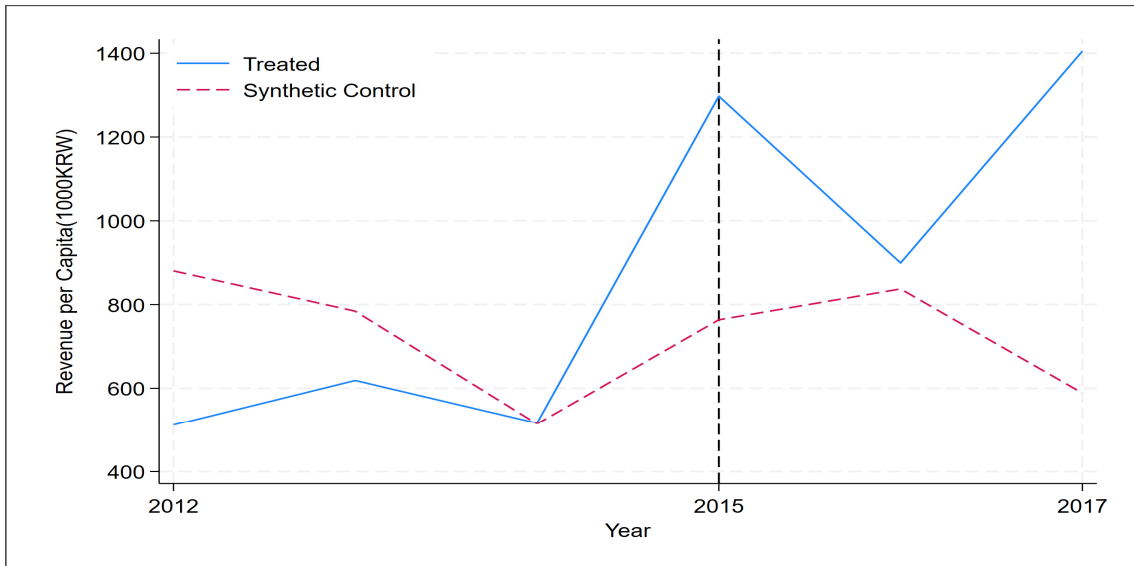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8]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한류 효과 통제 시 외국인 환자 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9]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한류 효과 통제 시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3) 내국인환자를 이용한 위약 검증(placebo test)

- 동 제도 도입 이후 [그림 IV-6] 및 [그림 IV-8]과 같이 처치군인 피부과·성형외과에서 관찰되는 외국인 환자 수 증가가 정책의 효과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 시기 피부과·성형외과의 내국인환자 수 변화를 검토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건강보험 진료 통계」 내 의원표시과목별진료인원 자료(2009~2023년)를 활용하여 유사한 합성대조법 분석을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수집 및 구분 방식의 제약으로 앞선 분석과 달리, 내과통합,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외과, 그 외 진료과 등 총 6개 진료과로 구분하여 합성대조군을 선정([그림 IV-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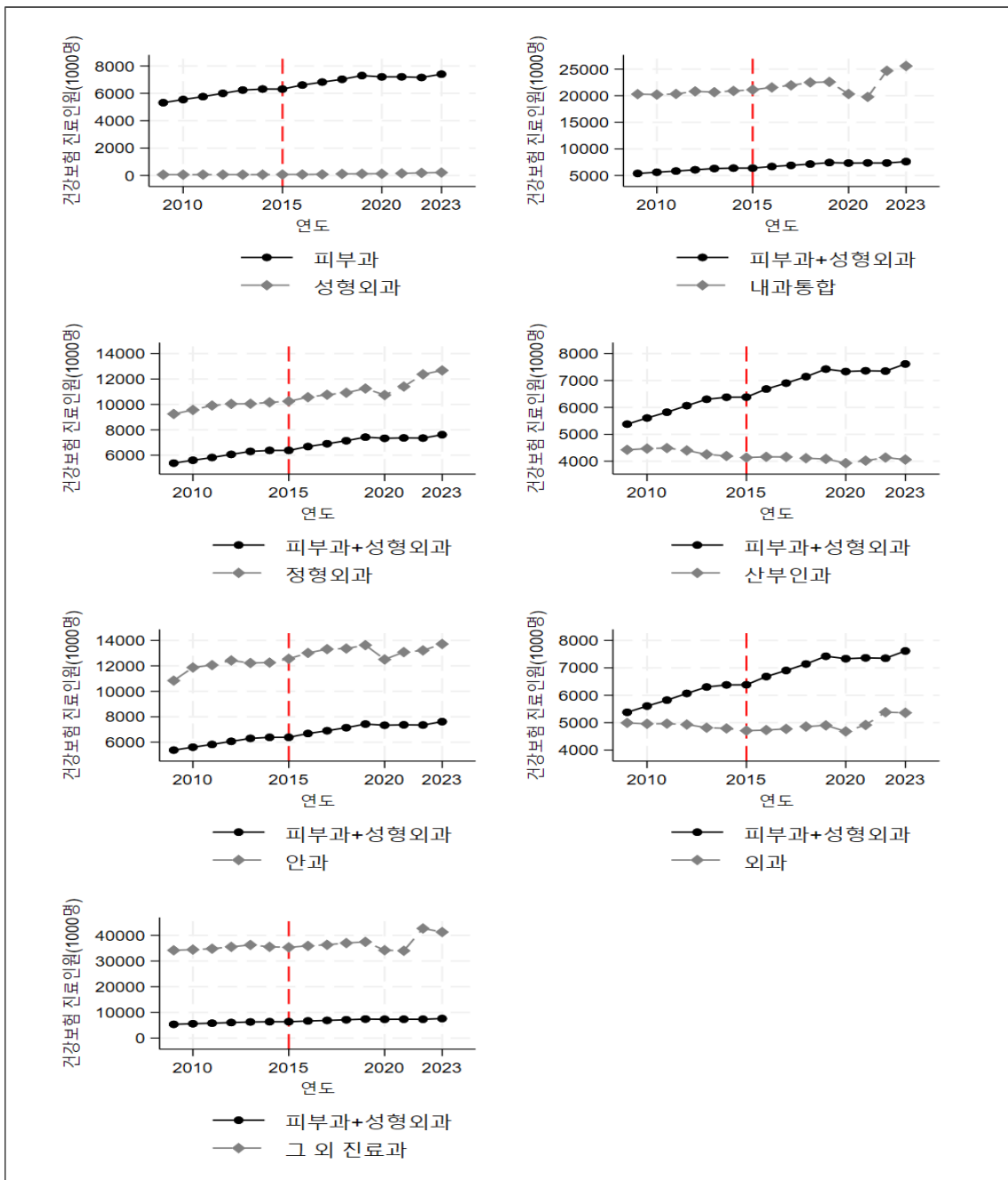
- 피부과·성형외과 대상 「부가세 환급 특례」는 외국인 대상 제도이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분석 시 정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2016년 동 제도의 가상의 도입 효과를 내국인 자료를 활용하여 합성대조법으로 추정하고, 추정된 정책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함

- 분석 결과 합성대조군 대비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진료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6년 이후 모든 시점에서 해당 추정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음(<표 IV-3> 참조)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동 제도 도입 이후 피부과·성형외과의 진료 인원 수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바, 외국인 환자 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

[그림 IV-10] 피부과·성형외과와 타 진료과의 내국인 진료인원 비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진료 통계」, 각 연도.

<표 IV-3> 합성대조군을 활용한 효과성 추정 결과: 내국인환자를 이용한 위약 검증 시

연도	내국인 진료인원(천명)	p-value
T+1(2016)	376.1	0.57
T+2(2017)	524.4	0.43
T+3(2018)	724.2	0.43
T+4(2019)	966.3	0.29
T+5(2020)	1,331.8	0.14
T+6(2021)	1,272.6	0.57
T+7(2022)	547.5	0.71
T+8(2023)	766.6	0.8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진료 통계」 활용하여 저자 추정

4) 한계점

- 이상에서 본 연구는 합성대조군 생성, 한류 효과 통제, 내국인환자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 제도의 효과를 강건하게 추정하고자 노력함
 - 그 결과 동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환자 수 증가 효과가 일부 존재하나, 방문객의 의료용역 이용량이 정책 도입에 대응하여 증가하는 내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발견함

- 동 제도 도입 이후 [그림 IV-6] 및 [그림 IV-8]에서 관찰되는 외국인 환자 수 증가를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시계열 추세가 온전히 동 제도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 도입·운영과 유사한 시기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폭발적 증대가 한류 동호회원 수 등에 의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분석 결과를 이해할 필요
 - 우리나라 의료진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및 선호, 우리나라 화장품 등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석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자료가 2017년까지 제한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장기간의 1인당 진료수입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던 한계점도 재차 언급될 필요

2. 세수 효과

- 「부가세 환급 특례」 관련 세수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동 제도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직접효과에 더해 외국인 의료용역 소비 확대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간접효과)를 수반하므로, 순 세수 효과(net fiscal impact)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조세지출 대비 세수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동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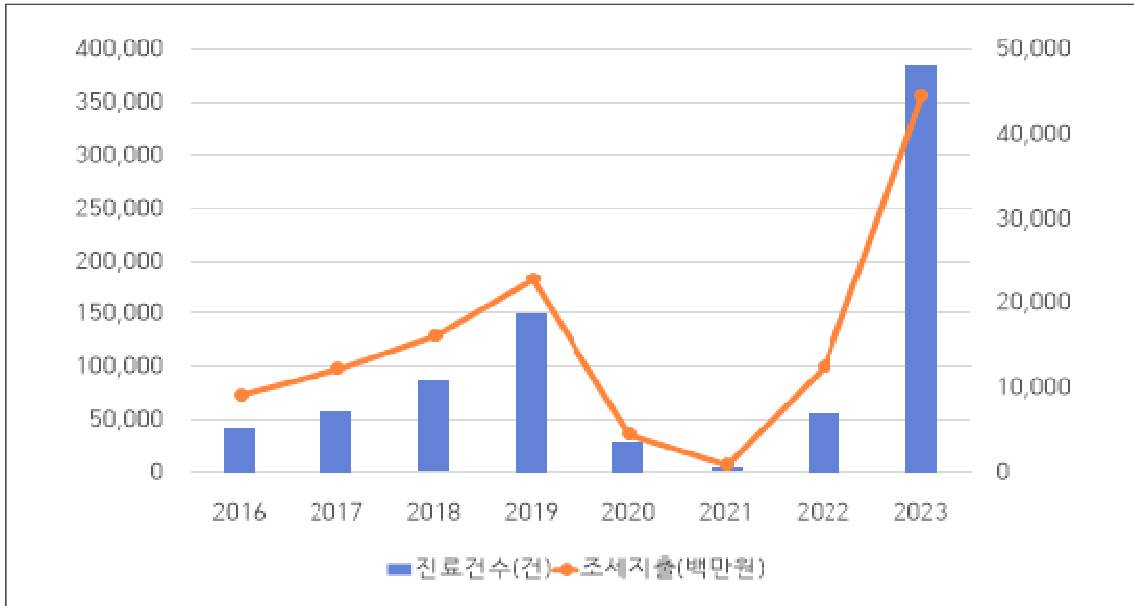
- 동 제도로 인한 세입 감소는 조세지출 규모를 통해 추정함
 - 조세지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구득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관련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사업자수수료 포함)으로 파악함
 -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445억원 수준
 - 제도 도입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2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IV-4> 연도별 환급건수 및 조세지출

연도	환급건수(건)	조세지출(백만원)
2016	40,777	9,171
2017	56,094	12,149
2018	84,730	16,084
2019	148,611	22,750
2020	28,181	4,471
2021	3,506	925
2022	54,574	12,483
2023	383,665	44,47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IV-11] 연도별 환금건수 및 조세지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세수 증대 효과의 경우, 외국인 의료용역 소비 확대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한 소득세 증가 정도로 추정함
 -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이 국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할 때 실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의료용역 소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외국인 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요구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의료관광 유발 소비 및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 등을 통한 추가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나,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세수 효과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동 제도로 인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총 진료비 증가분에 피부과·성형외과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출
 - 총 진료비 증가분은 미용·성형 진료과와 그 외 진료과의 제도 시행 전후 진료비 변화를 비교하여 추정

- 제도 시행 이후 각 연도의 진료비를 제도 시행 직전 연도(2015년) 및 직전 3개 연도(2013~2015년) 평균 진료비와 비교
 - 단 2016년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되어 연 단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
 -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용·성형 진료과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
 - 미용·성형 및 기타 진료과의 진료비 자료는 이동희·고대영(2024)을 참조
 -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세 미시자료에서 주업종이 피부과·성형외과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산출하여 구함
 - 진료비 증가분에 곱하여 세수 증가분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기준 실효세율을 이용함
- 미용·성형 진료과와 그 외 진료과의 제도 시행 전후 진료비 추이는 다음과 같음
- 미용·성형 진료과의 진료비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 시행 이후 2018년까지는 다소 정체, 2019년과 2023년에는 다시 크게 증가함
 - 그 외 진료과의 진료비 역시 제도 시행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시행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증가함
- 동 제도 시행 이후 미용·성형 진료과의 기타 진료과 대비 진료비 증가 효과는 <표 IV-5>에 제시되어 있음
- 첫 번째 열에는 2015년 대비 변화량, 두 번째 열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대비 변화량이 각각 제시되어 있음
 - 예컨대 2017년 동 제도로 인한 미용·성형 진료과의 진료비 증가분은 2015년과 비교 시 1,143억원, 2013~2015년 평균과 비교 시 1,126억원 수준
 - 진료비 증가분에는 외국인의 의료용역 소비 확대와 과표 양성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
 - 본 연구의 분석은 2016년 전후 미용·성형 진료과 진료비의 상대적 증가가 전적으로 동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함
 - 만일 2016년 이후 정부의 미용·성형 분야 지원 강화 혹은 해당 산업의 호황 등이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진료비 증가분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IV-5> 연도별 진료비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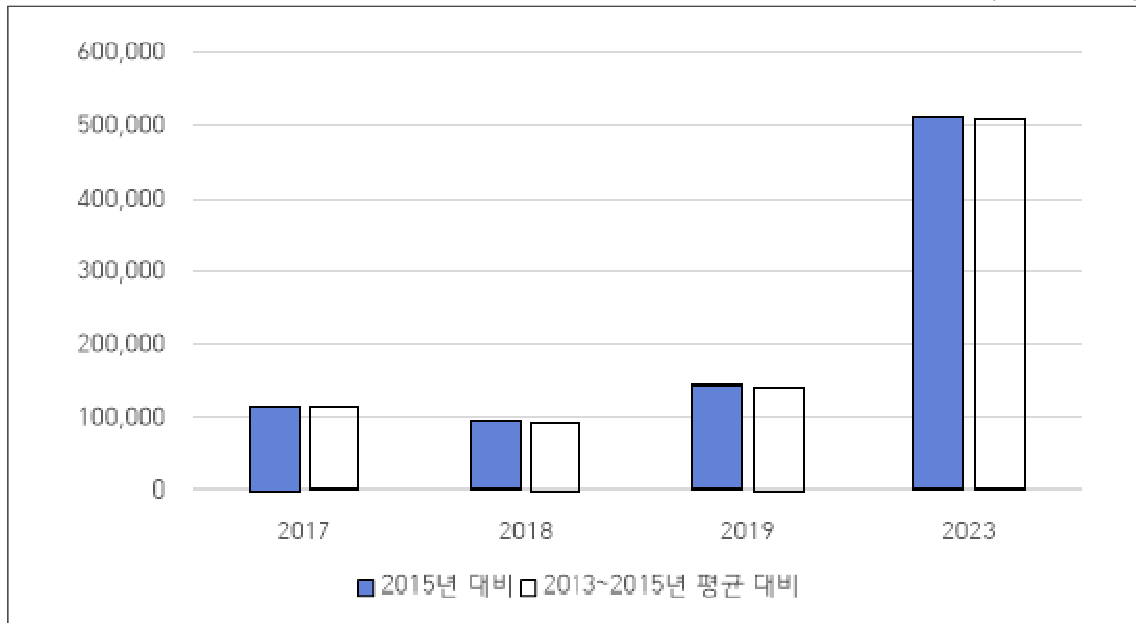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5년 대비 (1)	2013~2015년 평균 대비 (2)
2017	114,348	112,634
2018	94,819	93,105
2019	142,815	141,101
2023	509,576	507,862

자료: 이동희·고대영(2024) 참조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12] 연도별 진료비 증가 효과

(단위: 백만원)



자료: 이동희·고대영(2024) 참조하여 저자 추정

- 동 제도로 인한 연도별 세수 증대 효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음
 - 세수 증대 효과는 <표 IV-5>의 진료비 증가 효과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세 결정세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예컨대 2017년 동 제도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2015년과 비교할 경우 85억원이며, 2013~2015년 평균과 비교할 경우 84억원
 - 동 제도로 인한 양(+)의 세수 효과가 도출되었으나, 재정적 관점에서 동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을 반영한 순 세수 효과를 고려할 필요

<표 IV-6> 연도별 세수 증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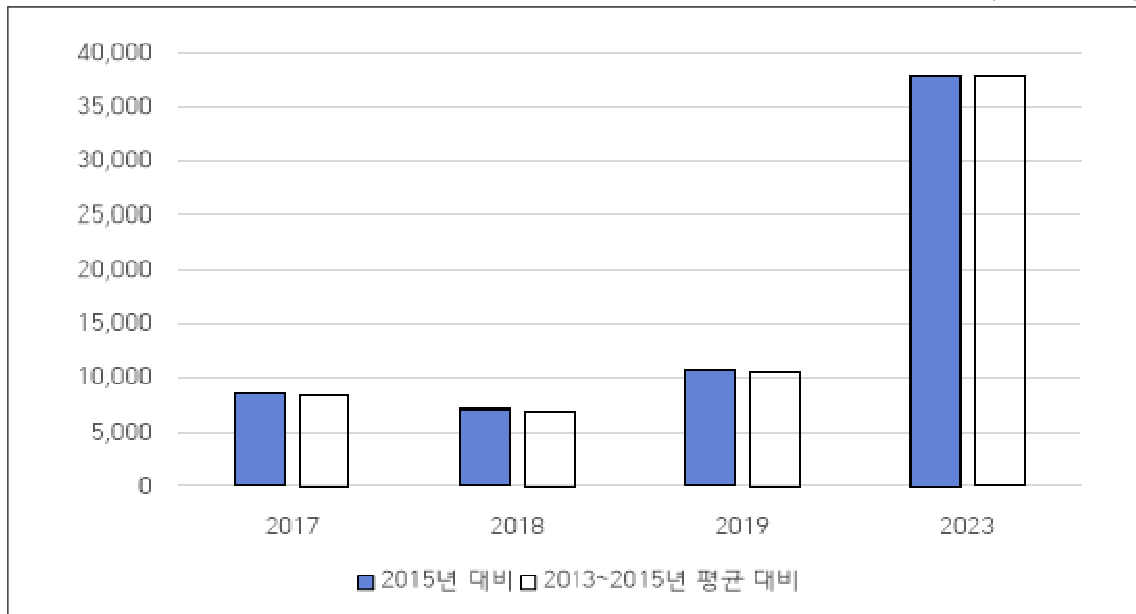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5년 대비 (1)	2013~2015년 평균 대비 (2)
2017	8,496	8,369
2018	7,045	6,918
2019	10,611	10,484
2023	37,861	37,734

자료: 저자 추정

[그림 IV-13] 연도별 세수 증대 효과

(단위: 백만원)



자료: 저자 추정

- 최종적으로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대 효과는 연도에 따라 0.43원에서 0.85원으로 추정됨(<표 IV-7> 참조)
 - 조세지출 1원당 세수 효과는 <표 IV-6>에 제시된 세수 증대 효과를 <표 IV-4>에 제시된 총 조세지출(사업자수수료 포함)로 나누어 산출함
 - 결론적으로 동 제도는 조세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세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7>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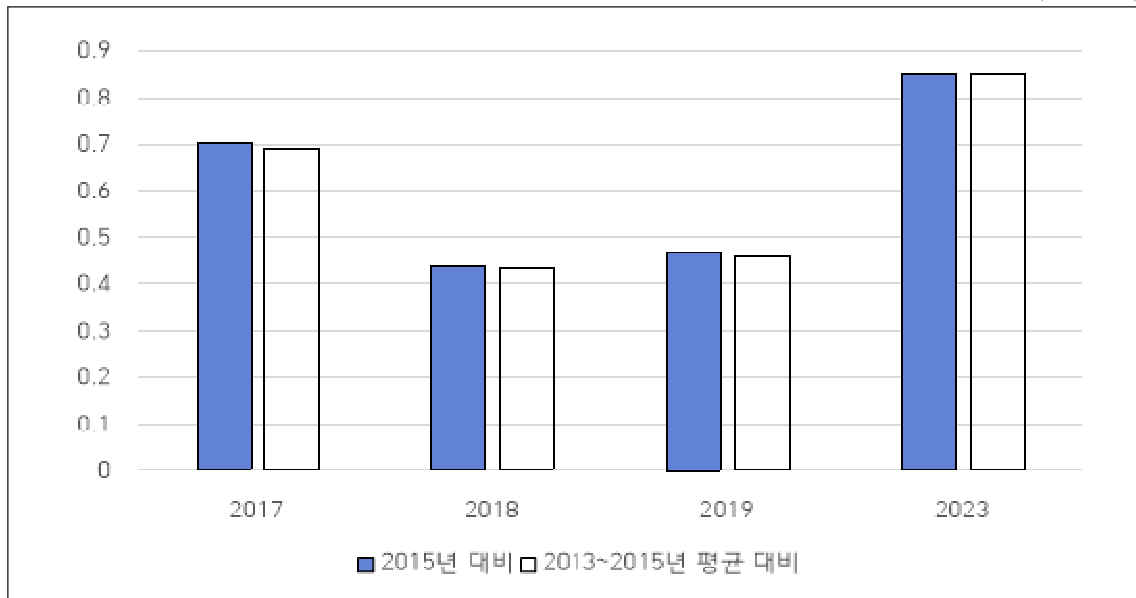
(단위: 원)

연도	2015년 대비 (1)	2013~2015년 평균 대비 (2)
2017	0.70	0.69
2018	0.44	0.43
2019	0.47	0.46
2023	0.85	0.85

자료: 저자 추정

[그림 IV-14]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대 효과

(단위: 원)



자료: 저자 추정

- 다음과 같은 분석의 한계로 이상의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
 - 제도 대상 진료과(처치군)와 비대상 진료과(대조군)의 집계 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함
 - 2016년 전후 처치군과 대조군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정책적·비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면, 본 연구의 추정치는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의료용역 소비 증대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한 소득세 증가 효과는 세수 증대의 범위에 포함된 반면, 의료관광 유발 소비 및 연관 산업의 과금 효과 등에 의한 세수 증대 요인은 자료 및 방법론의 한계로 포함되지 못함

3. 요약 및 소결

- 본 장에서는 가용 자료들을 활용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의 효과성을 평가함

-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 (분석 내용)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
 -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외연 효과) 및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내연 효과)으로 측정
 - (분석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도별·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구득하여 활용
 - (분석 방법) 최근 정책 효과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대조법을 활용
 -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외 진료과를 잠재적인 통제 집단 후보군으로 활용
 -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외연 효과는 발견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내연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즉 「부가세 환급 특례」 도입 이후 피부과·성형외과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의 증가는 관찰되나,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측면에서의 증가는 미관찰됨
 - (분석 한계) 본 연구의 추정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부가세 환급 특례」 운영 기간이 우리나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상승기와 겹침
 - 우리나라 의료진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및 선호, 우리나라 화장품 등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석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세수 효과) 의료기관 진료수입 자료 및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의 세수 효과를 시산함
 - 세수 효과는 조세지출 1원당 세수 증가분으로 정의
 - 세수 증가분은 동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에 피부과·성형외과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출

- 진료비 증가분은 제도 도입 전후 피부과·성형외과의 진료비 변화분과 그 외 진료과의 진료비 변화분을 비교하여 추정
- 「부가세 환급 특례」의 세수 효과는 0.43~0.85원 수준으로 추정됨
 - 즉 동 제도 도입·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증가분은 해당 조세지출 규모의 43~85% 수준
 - 단 간접적인 세수 증가분까지 고려할 경우 세수 효과는 증대될 여지가 있음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4항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함
 - 동 제도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신설되었던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종합평가)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타당성 분석) 2025년 현재 동 제도 도입·운영의 목적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장기간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상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는 2024년 조기 달성된바, 동 제도 도입·운영의 목적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가능
 - 또한 동 제도 도입·운영으로 내국인·외국인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세수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그간 운영 기간 역시 상당하였음
 - 한편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원리인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반하는바, 동 제도 장기 운영의 당위성은 높지 않음
 - (효과성 분석)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동 제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세수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외연 효과는 발견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내연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즉 동 제도 도입 이후 피부과·성형외과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의 증가는

- 관찰되나,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측면에서의 증가는 미관찰됨
- 「부가세 환급 특례」 운영 기간이 우리나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상승기와 겹치는데, 분석 결과 해석 시 유의가 필요
 - (세수 효과) 의료기관 진료수입 자료 및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의 세수 효과를 시산한 결과, 0.43~0.85원 수준으로 추정됨
 - 단 간접적인 세수 증가분까지 고려할 경우 세수 효과는 증대될 수 있음

2. 정책제언

- 이상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는 「부가세 환급 특례」 도입·운영 목적이 상당 수준 달성되었음을 시사
 - 동 제도는 2015년 12월 신설되어 2025년 7월 현재까지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기한이 총 여섯 차례 연장되어 왔던바, 조세특례 제도의 운영원칙에 따라 동 제도의 일몰 종료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 일몰 종료 이후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장려할 필요

참고문헌

- 김경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11.
- 김미희·김재현, 『코로나 전·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용실태 변화』, 『보건산업브리프』, 360, 2022, pp. 1~20.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3.
- _____,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도약 추진』, 보도자료, 2023. 5. 30.
- _____,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60만 명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도약 ‘박차’』, 보도자료, 2024. 4. 30.
- _____,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보도자료, 2025. 4. 3.
- _____,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5. 1.
- 손종필,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과 조세 감면 분석』, 『나라살림』, 제452호, 2025.
- 이동희·고대영,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타당성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산업연구원, 2024.
-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세무와회계저널』, 11(2), 2010, pp. 239~263.
- 정다운·정재호·성명재,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한국의료 이용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각 연도.
- 홍현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건산업 브리프』, 309, 2020, pp. 1~16.

-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 2010, pp. 493~505.
-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2), 2015, pp. 495~510.
- Abadie, A., & Gardeazabal, J., “The economic costs of conflict: A case study of the Basque Cou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2003, pp. 113~132.
- Benedek, D., De Mooij, R. A., Keen, M., & Wingender, P., “Varieties of VAT pass through,”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7, 2020, pp. 890~930.
- Benzarti, Y., Carloni, D., Harju, J., & Kosonen, T., “What goes up may not come down: asymmetric incidence of value-added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12), 2020, pp. 4438~4474.
- Connell, J., “Medical tourism: Sea, sun, sand and ... surgery,” *Tourism Management*, 27(6), 2006, pp. 1093~1100.
- Gulsen, M. A., & Solak, I., “Health Tourism Tax Incentives in Turkey in 2024,”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ourism And Hospitality*, 2(4), 2024, pp. 6~17.
- Hanefeld, J., Horsfall, D., Lunt, N., & Smith, R., “Medical tourism: a cost or benefit to the NHS?,” *PLoS One*, 8(10), 2013, e70406.
- Kosonen, T., “More and cheaper haircuts after VAT cut? On the efficiency and incidence of service sector consumption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1, 2015, pp. 87~100.
- OEC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nsumption taxes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2, OECD Publishing, 2014.
- Sung, M. J., “Comparison of Fiscal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VAT Exemptions in Korea and Japan,”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 2018, pp. 1~39.
- 국제의료정보포털,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 <https://www.medicalkorea.or.kr/ghip/frgnrPatnt>, 검색일자: 2025. 8. 3.
-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전 세계 한류동호회원 현황』, <http://kf.or.kr/koreanstudies/hallyu.do>, 검색일자: 2025. 6. 15.

Apa, “VAT paid for medical services provided to foreigners to only be refunded for cashless payments in Azerbaijan,” <https://en.apa.az/official-news/vat-paid-for-medical-services-provided-to-foreigners-to-only-be-refunded-for-cashless-payments-in-azerbaijan-457394>, 검색일자: 2025. 6. 12.

Israel Tax Authority, “Zero VAT on Tourism Services Provided to Tourists Visiting Israel,” <https://www.gov.il/en/pages/vat-tourists-zero-rate>, 검색일자: 2025. 6. 11.

Karen Audit, “Yabancı Uyruklu Kişilere Türkiye’de Verilen Sağlık Hizmetlerinde Kurumlar Vergisi ve KDV İstisnası,” <https://www.karenaudit.com/yabanci-uyruklu-kisilere-turkiyede-verilen-saglik-hizmetlerinde-kurumlar-vergisi-ve-kdv-istisnasi>, 검색일자: 2025. 5. 29.

Living in Uruguay, “Uruguay Tourist VAT Refund: Save Big with Tax Benefits & Tax-Free Shopping (2024-2026 Update),” <https://livinginuruguay.com/uruguay-tourist-vat-refund-save-big-with-tax-benefits-tax-free-shopping-2024-2026-update/>, 검색일자: 2025. 6. 12.

Muhasebe News, “Yabancı Uyruklu Gerçek Kişilere Verilen Sağlık Hizmetlerinde KDV ve Kurumlar Vergisi İstisnası”, <https://www.muhasenews.com/yabanci-uyruklu-gercek-kisilere-verilen-saglik-hizmetlerinde-kdv-ve-kurumlar-vergisi-istisnasi>, 검색일자: 2025. 5. 29.

TaxTron, “Tax Refunds for International Visitors to Canada”, https://www.taxtron.ca/blog/Tax_Refunds_for_International_Visitors_to_Canada, 검색일자: 2025. 6. 12.

Visit Argentina, “21% VAT Refund on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in Argentina”, <https://www.argentina.travel/en/news/21-vat-refund-on-accommodation-for-foreign-tourists-in-argentina>, 검색일자: 2025. 6.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_____,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_____, 「외국환거래법」,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_____,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_____,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진료 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20.

부 록



<부록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법령

<부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4. 12.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징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5. 7. 14.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① 법 제107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표 2>의 계속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107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법 제107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2. 5.]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색일자: 2025. 7. 14.

<부록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해외 사례

1. 튀르키예

- 튀르키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보건기관 내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예방1 의학, 진단, 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해 KDV(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²³⁾
 - 외국인이란 ‘튀르키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블루카드를 소지한 자 중 튀르키예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튀르키예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튀르키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년 중 6개월 이상 튀르키예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자(일시적 출국은 이 기간에서 제외됨)
 - 단 학업·치료·휴식·여행 등의 목적이나 임시 직무, 부득이한 사유(구급 질병 등)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했다라도 거주로 간주하지 않음
 -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기관은 외국인의 여권을 통해 튀르키예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여권 사본(터키 국적을 포기하고 블루카드를 소지한 경우, 블루카드 사본)을 확보해야 함
 - 외국인은 자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 또는 블루카드와 튀르키예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튀르키예와의 양자 조약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비자 없이 신분증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증명

23) Karen Audit, “Yabancı Uyruklu Kişilere Türkiye’de Verilen Sağlık Hizmetlerinde Kurumlar Vergisi ve KDV İstisnası,” <https://www.karenaudit.com/yabanci-uyruklu-kisilere-turkiyede-verilen-saglik-hizmetlerinde-kurumlar-vergisi-ve-kdv-istisnasi>, 검색일자: 2025. 5. 29.

- 외국 신분증 사본과 입국일이 명시된 문서 제출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튀르키예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80%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음²⁴⁾

-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튀르키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 것
 - 제공되는 서비스가 순수한 의료 서비스이고 해외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세금계산서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수취인으로 발행되었을 것
 -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일 것

2. 이스라엘

□ 이스라엘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관광 서비스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국민건강 조례에서 승인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²⁵⁾

- 이스라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관광객(외국 국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관광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1975년 「부가가치세법」 30(a)(8) 및 1976년 「부가가치세 규정」 12(a), 12a(c), 12b조에 따르면,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특정 관광 서비스에 대해 0%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객 대상 서비스의 경우 1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1. 호텔 숙박 및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부대 서비스

- 식음료

24) *Muhasebe News*, “Yabancı Uyruklu Gerçek Kişilere Verilen Sağlık Hizmetlerinde KDV ve Kurumlar Vergisi İstisnası,” <https://www.muhasubenews.com/yabanci-uyruklu-gercek-kisilere-verilen-saglik-hizmetlerinde-kdv-ve-kurumlar-vergisi-istisnasi>, 검색일자: 2025. 5. 29.

25) Israel Tax Authority, “Zero VAT on Tourism Services Provided to Tourists Visiting Israel,” <https://www.gov.il/en/pages/vat-tourists-zero-rate>, 검색일자: 2025. 6. 11.

- 수영장 및 관련 서비스 이용
 - 세탁 서비스
 - 객실에서 사용하는 TV 대여 요금
 - 사우나 및 관련 서비스 이용
 - 전화 및 팩스 사용
 - 스포츠 및 건강 시설 이용
 - 문서 번역, 편지 작성 및 기타 사무 서비스
2. 자율 주행을 위한 개인 차량 대여 서비스
 3. 개인 차량 또는 버스로 여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4. 버스 투어 또는 크루즈 동안 제공되는 식사
 5.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든 종류의 배를 이용한 관광객 수송
 6.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통한 관광객 수송
 7. 국민건강 조례에 의해 승인된 병원에서의 입원
 8. 5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참가권 판매
 9. 외국인에게 전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시 공간 사용 권리 및 관련 서비스
-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B/2, B/3, B/4 비자 또는 방문 허가를 받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관광객이거나 외교관 등 명령 또는 특별 허가에 따라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람일 것
 2. 서비스 제공자가 초청장 등 거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서비스 제공자가 관광객의 이름, 영구 거주지, 여권 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관광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
 5. 관광객을 위한 투어 또는 개인 차량 대여 서비스의 경우, 청구서에 차량 등록 번호와 운전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버스 투어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청구서에 버스 등록 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7.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가격, 결제 수단, 결제 통화를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함

3.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음²⁶⁾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비용이 단일 전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300 AZN을 초과하고, 비현금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여권 또는 기타 국경 통과 서류를 확인한 후 서비스 명칭, 가격,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금액, 결제 방법(현금/비현금) 등을 포함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이 세금계산서는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산하 국세청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됨

4. 캐나다

- 캐나다에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구매한 일부 상품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통합 판매세(HST) 환급을 받을 수 있음²⁷⁾
 -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 방문객(관광객)
 - 유효한 유학 또는 취업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 학생 및 근로자
 - 유효한 비자 또는 여권을 소지한 자
 -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매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상품(의류, 기념품, 선물 등)
 - 단기 숙박(호텔 숙박 등)
 - 투어 패키지

26) Apa, "VAT paid for medical services provided to foreigners to only be refunded for cashless payments in Azerbaijan," <https://en.apa.az/official-news/vat-paid-for-medical-services-provided-to-foreigners-to-only-be-refunded-for-cashless-payments-in-azerbaijan-457394>, 검색일자: 2025. 6. 12.

27) TaxTron, "Tax Refunds for International Visitors to Canada," https://www.taxtron.ca/blog/Tax_Refunds_for_International_Visitors_to_Canada, 검색일자: 2025. 6. 12.

- 식음료(식당, 카페 또는 테이크아웃)
- 환급을 받으려면 참여 소매업체에서 세금 환급 양식 또는 GST/HST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환급 장소(공항, 국경 검문소, 환급 센터 등)에서 영수증과 환급 양식, 반출 증빙서류(여권, 탑승권 등)를 제시하여야 함
- GST는 적격 구매 금액의 5%(최소 \$20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HST는 주마다 다름(온타리오주 13%, 노바스코샤주 15% 등)
- 구매 후 30일 이내에 상품을 반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자동차, 담배 등의 구매는 환급 대상이 아님

5.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21%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음²⁸⁾
 - 숙박 시설은 호텔, 여관, 게스트 하우스, 모텔, 캠프장, 아파트 호텔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숙박 요금에 조식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식 금액에도 적용됨
 -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증을 입국 증명서와 함께 제시해야 하며, 결제는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는 국제 통화 송금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부가가치세 면제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및 청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추가 서류나 환급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에어비앤비 등 비공식 제공업체로 등록된 숙박 시설
 - 아르헨티나 페소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숙박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28) Visit Argentina, "21% VAT Refund on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in Argentina," <https://www.argentina.travel/en/news/21-vat-refund-on-accommodation-for-foreign-tourists-in-argentina>, 검색일자: 2025. 6. 12.

6. 우루과이

- 우루과이에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숙박 시설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감면받을 수 있음²⁹⁾
 - 호텔 등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22%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면세가 바로 적용됨
 -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 서비스의 경우 9%p 감면된 1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식당, 바, 매점, 카페 등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서비스(단, 숙박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식음료에 한함)
 - 파티 및 행사 케이터링 서비스
 - 파티 및 행사 관련 기타 서비스
 - 차량 대여(운전자가 없는 차량)
 -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전자 화폐,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감면 내용은 결제영수증(POS 티켓)에 명시되고 카드 명세서에 반영됨
 - 단 「1996년 개정 조세법」 제4편 제52조 E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 이용 시, 총 결제 금액의 18.03%가 감면됨

29) Living in Uruguay, “Uruguay Tourist VAT Refund: Save Big with Tax Benefits & Tax-Free Shopping (2024-2026 Update),” <https://livinginuruguay.com/uruguay-tourist-vat-refund-save-big-with-tax-benefits-tax-free-shopping-2024-2026-update/>, 검색일자: 2025. 6. 12.

<부록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전문가 질의서

1.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이하 「부가세 환급 특례」)의 특례 사항, 지출 규모 등은 아래와 같음
 - (특례 사항)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환급대상 의료용역)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
 -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 (제도 연혁) 지난 '15년 12월 신설되어 '16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기한이 6차례 연장
 - (환급 현황) 동 제도가 도입·적용되기 시작한 '16년 4월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총 120만 7,358건의 환급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환급액은 총 1,467억원 수준
 - 특히 2024년 6월 현재 환급건수가 41만 3,276건으로 집계되어 2023년 환급건수(38만 3,665건)를 초과

2. 질의 사항

- 1) (정책목표 적절성 및 성과 평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와 판단 기준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2) (환급 대상의 범위 타당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 제도 설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확대 또는 축소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3)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동 제도가 창출하는 경제적 편익이 세수 감소를 상쇄하거나 초과한다고 보십니까?

- 4) (최근 환급액 증가에 대한 해석) 코로나19 이후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상적인 수요 회복 외 제도 악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 5) (제도 운용상 문제점) 현 제도의 운영과정(환급 절차, 요건, 기관 지정 등)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개선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 6) (제도 악용 및 사후관리) 외국인 환자 또는 일부 의료기관에 의한 제도 남용·편법 환급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사례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안해 주십시오.

- 7) (국제 비교 및 경쟁력 평가) 주요 경쟁국들의 의료관광 관련 세제 지원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경쟁력과 특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8) (제도 연장 필요성)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 여부와 해당 판단의 근거(예: 정책 목표 달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 9) (일몰 연장 전제 시 제도 개선 과제) 본 제도의 일몰을 연장한다고 가정할 때, 운영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 10) (제도 대안 및 중장기 정책 방향) 현 환급 특례 방식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